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2014.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이 형 민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9
II.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소득세 공제제도와 관련 통계 현황	12
1. 소득세 과세체계	12
가. 개요	12
나. 세액결정을 위한 단계적 흐름	15
다.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	19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	33
2. 소득세 공제제도	35
3. 소득세 통계	42
가. 일반현황	42
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관련 사항	45
III. 주요국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소득세 공제제도와 소득세 관련 통계	54
1. 미국	54
가. 소득세 과세체계	54
나. 소득세 공제제도	61
다. 소득세 통계	66
2. 캐나다	68
가. 소득세 과세체계	68
나. 소득세 공제제도	73
다. 소득세 통계	81
3. 호주	84
가. 소득세 과세체계	84

나. 소득세 공제제도.....	89
다. 소득세 통계	95
4. 일본.....	98
가. 소득세 과세체계	98
나. 소득세 공제제도.....	104
다. 소득세 통계	107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11
1. 국제비교.....	111
가. 소득세 과세체계	111
나. 소득세 통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비율.....	113
다. 소득세 공제제도	115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	119
마.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119
2. 시사점.....	121
가. 소득세 공제제도의 차등 적용 완화.....	121
나. 성실사업소득자제도의 정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124
다. 경비율 추계신고 범위의 축소를 통한 장부기장 실무 장려.....	126
라. 중간예납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128
참고문헌.....	129

표목차

〈표 II -1〉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	14
〈표 II -2〉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 업종별 수입금액	21
〈표 II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27
〈표 II -4〉 기장의무별 수입금액 요약	27
〈표 II -5〉 성실사업소득자 자격요건 및 혜택	35
〈표 II -6〉 근로소득공제(2014년)	37
〈표 II -7〉 인적공제 항목의 적용대상 범위	38
〈표 II -8〉 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별 적용대상 범위	39
〈표 II -9〉 근로소득세액공제	40
〈표 II -10〉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적용대상 범위	41
〈표 II -11〉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비율	42
〈표 II -12〉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율 비교(사업소득자 대비 근로소득자)	43
〈표 II -13〉 사업소득자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	44
〈표 II -14〉 2012년 개인사업소득자 업종별 사업소득자 수 및 비율	44
〈표 II -15〉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46
〈표 II -16〉 2008~2012년 사업소득자 수 현황	47
〈표 II -17〉 개인사업소득자 대비 사업소득 신고자 비율	47
〈표 II -18〉 사업소득자 기장의무 형태별 사업소득 신고자 현황(「소득세법」상)	48
〈표 II -19〉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별 사업소득 신고자 현황	50
〈표 II -20〉 사업소득자 기장신고 상세현황	51
〈표 II -21〉 사업소득자 추계신고 상세현황	52
〈표 II -22〉 세무조사에 의한 소득세 결정	52
〈표 II -23〉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	53

〈표 III-1〉 미국 연방 소득세율(2014년).....	55
〈표 III-2〉 2007~2011년 소득세 신고내역.....	66
〈표 III-3〉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 납세자 비율.....	67
〈표 III-4〉 2007~2011년 신고자 수 현황	67
〈표 III-5〉 소득원천별 소득금액 및 비율.....	68
〈표 III-6〉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율체계.....	69
〈표 III-7〉 차량유지비 공제 한도액	74
〈표 III-8〉 영업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자 비용 공제 예시.....	76
〈표 III-9〉 기능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자 비용 공제 예시.....	78
〈표 III-10〉 연방 「소득세법」상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및 최대세액공제한도액(2014).....	80
〈표 III-11〉 캐나다 연방 세수입 구성(2008년, 2009년).....	81
〈표 III-12〉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액 산출 신고 현황.....	82
〈표 III-13〉 소득원천별 캐나다 연방 소득세 신고현황.....	83
〈표 III-14〉 캐나다 연방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 현황.....	83
〈표 III-15〉 캐나다 연방 소득세 주요 세액공제 신청 현황.....	84
〈표 III-16〉 호주 소득세 세율체계(2013/2014 과세연도).....	86
〈표 III-17〉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94
〈표 III-18〉 세액공제 요약(Personal tax offsets and rebates).....	94
〈표 III-19〉 호주 납세의무자별 세무 신고현황	95
〈표 III-20〉 호주 소득세 신고현황.....	96
〈표 III-21〉 호주 소득세 신고방법별 현황	96
〈표 III-22〉 소득원천별 소득세 신고현황	97
〈표 III-23〉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 신청 현황.....	98
〈표 III-24〉 일본 소득세 세율체계(2014 과세연도).....	99
〈표 III-25〉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에 따른 사업소득세 비교.....	102
〈표 III-26〉 일본 급여소득공제(2014 과세연도).....	104
〈표 III-27〉 인적소득공제제도 요약	105

〈표 III-28〉 기타(항목별) 소득공제제도 요약	106
〈표 III-29〉 일본 국세(國稅) 수입 구성	107
〈표 III-30〉 소득세 납세자 및 소득금액 현황(표본조사)	108
〈표 III-31〉 급여소득자 및 총급여액(표본조사)	109
〈표 III-32〉 연도별 소득공제 현황(표본조사)	109
〈표 III-33〉 연도별 세액공제 현황(표본조사)	110
〈표 III-34〉 연도별 청색신고자 현황(표본조사)	110
〈표 IV-1〉 국가별 소득세 최저 및 최고세율 비교	112
〈표 IV-2〉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신고자 비율	113
〈표 IV-3〉 국가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현황	114
〈표 IV-4〉 우리나라 소득원천별 금액 및 비율	114
〈표 IV-5〉 국가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소득금액 비율 비교	115
〈표 IV-6〉 국가별 근로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규정	116
〈표 IV-7〉 국가별 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비교	120

그림목차

[그림 II -1]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체계	17
[그림 II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체계	18
[그림 II -3]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s).....	45
[그림 III-1] 미국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59
[그림 III-2] 캐나다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72
[그림 III-3] 호주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88
[그림 III-4] 일본 소득세 과세체계.....	103

I. 서론

-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소득세 납부세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 경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에 일정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사업소득자의 세원이 투명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양성화되지 않았다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필요경비의 경우, 사업소득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실제 비용이나 추계에 의한 개산비용을 공제받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에 의한 개산공제가 적용됨
 - 소득세 공제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항목이 대표적임
 -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의 인상, 월세액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근로소득 대부분이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세액징수가 가능한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에 의해 과세권이 확보되므로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중요한 쟁점이 됨

- 현행 세제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무행정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가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주로 최종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업장 가맹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하고 있음
 -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기준경비율 적

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부 기장의 유인을 제공함

- 최근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자에게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과세양성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성실사업소득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소득원천 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공제제도에 있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세원이 대부분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는 여전히 세원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를 주로 참고하여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과세체계 차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대상 주요국으로는 납세의식이 비교적 높고 소득세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캐나다, 호주와 우리나라와 소득세 과세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선정함
 - 각 국가별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국가 고유의 전반적 소득세 체계
 - 그 소득세 체계에서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공제(필요경비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점
 - 우리나라 ‘성실사업소득자’에 준하는 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 각국의 주요 소득세 통계 현황

- 다만 본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현행 소득세제와 국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 제도를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으며,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분명히 함

- 세부담을, 소득탈루을, 사업소득자에 대한 각종 소득세제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 사업소득자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정도 및 소득세 체계와의 연계성,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나 금융정보감시의 강도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현행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과세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4개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및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관련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제도를 국제비교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

Ⅱ.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소득세 공제제도와 관련 통계 현황

1. 소득세 과세체계

가. 개요

1) 과세소득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각 조문에서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음
 - 제한적 소득개념으로서의 소득원천설과 포괄적 소득개념으로서의 순자산증가설 중 전자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단,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소득인 경우에는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를 취함
 -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하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뉨²⁾

1) 이하에서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논의함

- 다만,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도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와 중간예납

- 과세기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표준과 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³⁾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으로 함⁴⁾
-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해당하는 중간예납 고지액 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직전년도 종합소득 소득세 납부액이 없는 거주자일지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간예납기간내에 종합소

2)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 시에는 종합소득 중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재산소득에 통합하고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에 통합하여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종전 11가지 종류로 구분하던 것을 9가지 종류로 구분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에는 종합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통합하여 과세소득을 8가지 종류로 구분하도록 개정하였음

3)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4)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함⁵⁾ 6)

〈표 II-1〉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

(단위: 만원, %)

과세표준	세율
1,200 이하	6
1,200 ~ 4,600	15
4,600 ~ 8,800	24
8,800 ~ 15,000	35
15,000 초과	38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3)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제도는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담세액을 과세권자인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말함
 - 납세의무자가 실제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임
- 원천징수의 대상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판별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됨
 -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자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부 인적용역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함
 - 이 경우 원천징수로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추후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산과정을 필요로 함

5) 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한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소득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6)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 근로소득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⁷⁾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사업소득자의 수입액은 대체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됨

-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자 중 소득의 지급처가 일정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음⁸⁾
 -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⁹⁾
 -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세액결정을 위한 단계적 흐름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그림 II-1] 참조)
 - 6가지의 소득금액은 자체 계산방식에 따라 독자적으로 산출됨

7) 「소득세법」 제134조

8)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9) 방문판매 및 음료배달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함

- 이자소득금액은 총이자수입액을, 배당소득금액은 총배당수입액에서 배당가산액 (Gross-Up)을 더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은 총사업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입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은 관련 수익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공제하지 않음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여타 소득금액에서 공제됨
-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제도는 과세표준금액을 감소시켜주는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세액공제를 혼합하여 운용함
- 소득세 공제제도는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바, 본장의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함
- 종합소득공제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됨¹⁰⁾
-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가 있음
 - 조세정책 목적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¹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¹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¹³⁾가 있음
- 세액공제 및 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

10)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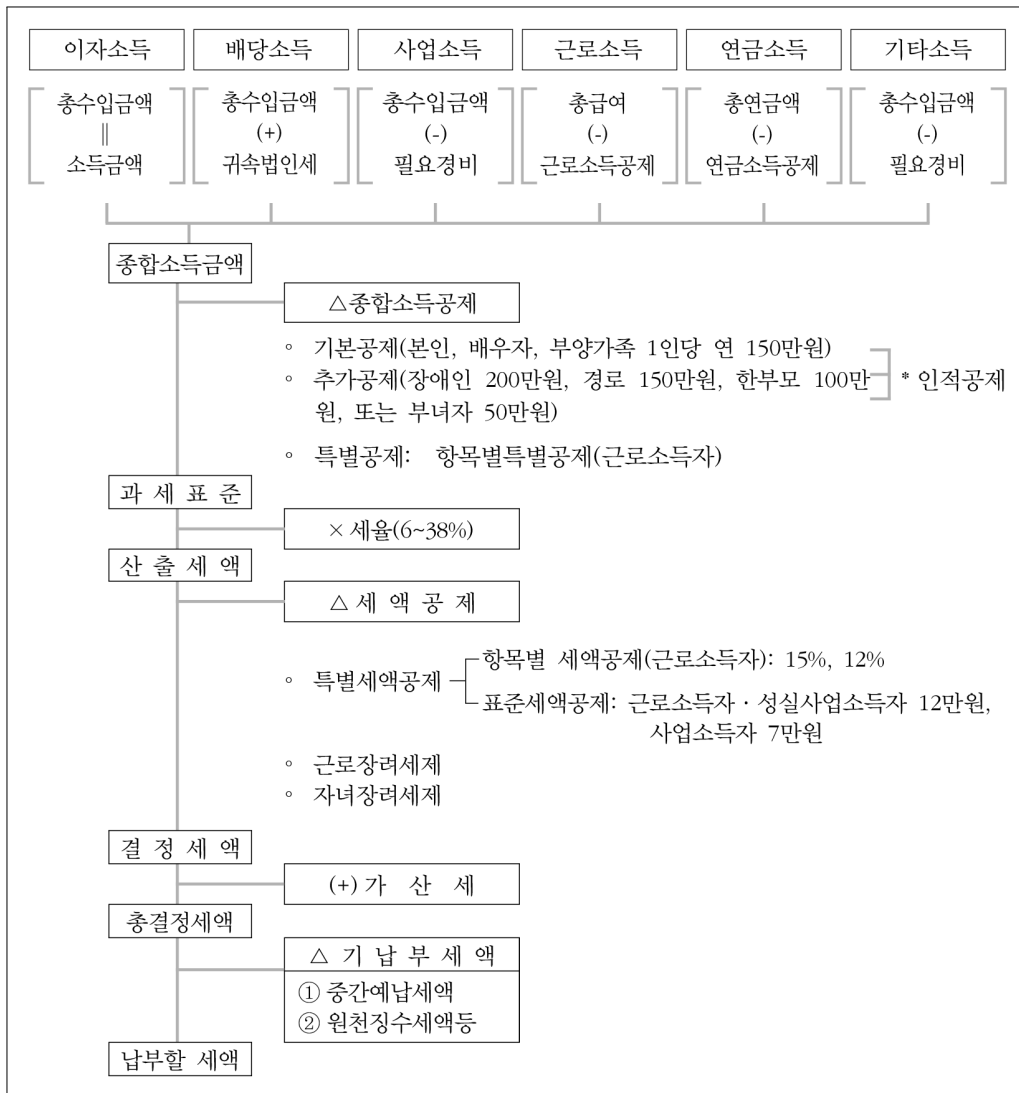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1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음¹⁴⁾

[그림 II -1]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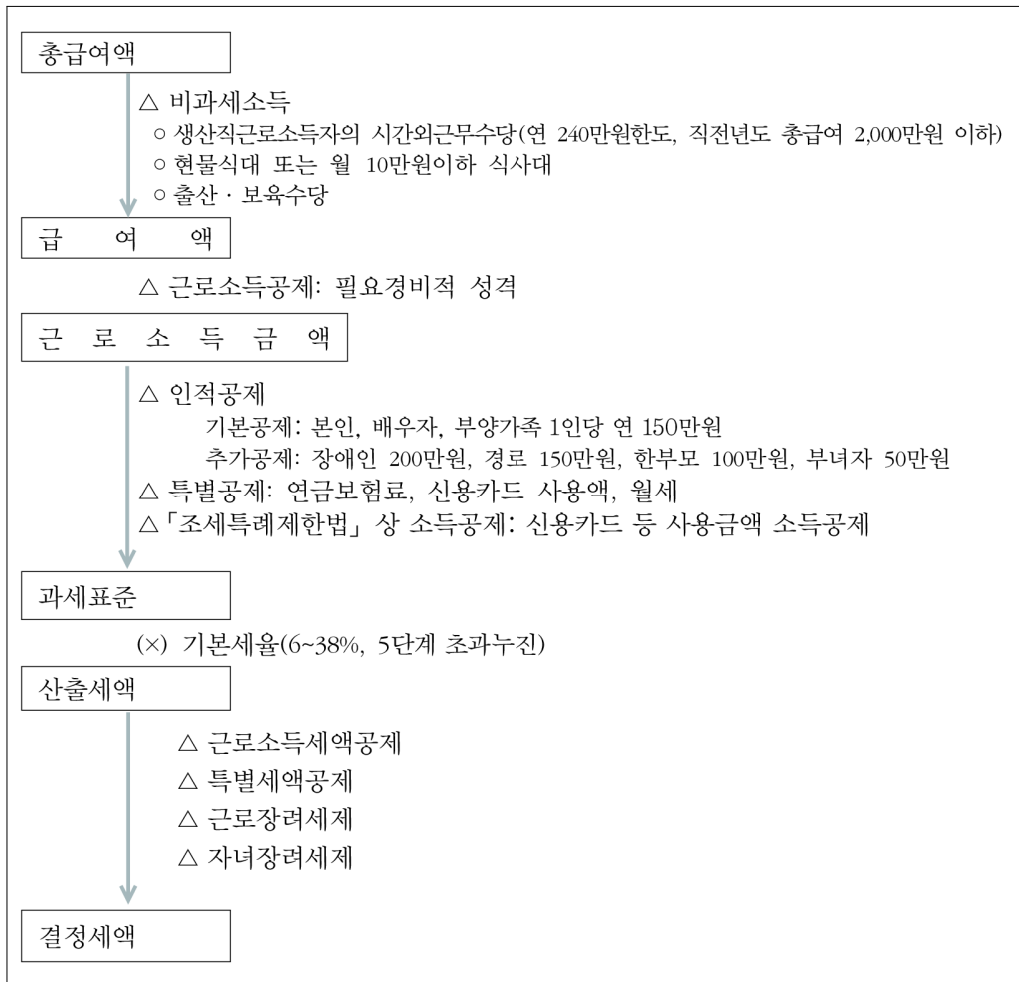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3), p.51 도표 수정

14) 「소득세법」 제56조 내지 제59조의4

- 해당 과세기간동안 납세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근로소득 지급 시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음 (그림 II-2 참조)
 -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그림 II-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체계



자료: 기획재정부(2013), p.65 도표 수정

다.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위험부담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등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름
 -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수당·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의미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료됨
 - 사업소득은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하여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에 의해 과세권이 결정되므로 세원의 투명성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대한 신뢰수준이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지급과 동시에 세액이 징수되는 근로소득의 신뢰수준과 동일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부담세액의 산정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차등을 두고 있음
- 사업소득자의 세원의 투명성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대한 신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소득자의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봄
-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¹⁵⁾

15)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 근로소득은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어 과세권의 확보가 용이한데 비하여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하여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에 의해 과세권이 결정됨
 - 그러므로 전자에 비하여 세원의 투명성과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사업소득자가 자체적으로 기록·계상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는 과소신고 유인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은 이러한 사업소득자의 신고내역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과세당국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라 일정한 혜택 및 제재를 부여하고 있음

1) 장부기장 의무를 규정한 제도

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기록과 비치의무

-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¹⁶⁾
 - ‘복식부기 장부’란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함
-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음
 - 간편장부란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16) 「소득세법」 제160조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함

–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 업종별로 일정규모 미만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함을 의미함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사업 등, 하수처리업 등, 운수업 등: 1억 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표 II-2〉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 업종별 수입금액

업종 구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사업 등, 하수처리업 등, 운수업 등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천 500만원

주: 육탕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자임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나) 계산서 발행 및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¹⁷⁾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무가 있음

또한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를 반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17) 「소득세법」 제163조

수취하고,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¹⁸⁾¹⁹⁾

- 단,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연장됨
- 적격한 증빙서류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있음

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²⁰⁾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대상임
 -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
 -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소득자,
 - － ③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
-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됨
 -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

1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19) 「소득세법」 제160조의2

20)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

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 또한 주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감안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일정 요건’이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등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규정하는 업종’ 요건을 포함함
 - － 2014년 1월부터는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이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되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소득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라)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²¹⁾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소득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용 계좌는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여야 하고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마) 외부 세무조정예 의한 사업소득 신고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산서는 외부의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함²²⁾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사업 등, 하수처리업 등, 운수업 등: 3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5억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소득자

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

21) 「소득세법」 제160조의5

22)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²³⁾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
 - －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사업 등, 하수처리업 등, 운수업 등은 10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5억 원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소득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 추계신고를 위한 경비율제도

-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그러나 사업소득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하여 결정함²⁴⁾
 -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이 추계조사 대상임
- 이와 같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가 있음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따라 결정되는 법정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

23) 「소득세법」 제70조의2

24) 「소득세법」 제80조

-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법정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함²⁵⁾
-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미비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4배(복식부기의무자는 3배)를 한도로 함
 - 단, 사업용고정자산 매입비용은 주요 경비에서 제외함

소득금액(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증빙서류에 의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

- 단순경비율제도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하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를 말함
-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천만원(신규로 사업개시 시에는 3억원)임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사업 등, 하수처리업 등, 운수업 등은 3천 6백만원(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5억원)임
 -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2천 4백만원(신규로 사업개시 시에는 7천 5백만원)임
 - 단,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자,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25)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로서 기준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사업소득자 등에게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표 II-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단위: 만원)

업종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000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사업 등, 하수처리업 등, 운수업 등	3,600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2,400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아) 업종별·수입금액별 장부의 기장 및 보관의무 요약

- 이상에서 논의된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소득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소득자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수입금액과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수입금액을 정리하면 〈표 II-4〉와 같음

〈표 II-4〉 기장의무별 수입금액 요약

(단위: 만원)

업종 구분	기장의무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세무 조정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0,000 이상	60,000 이상	200,000 이상	6,000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사업 등, 하수처리업 등, 운수업 등	15,000 이상	30,000 이상	100,000 이상	3,600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500 이상	15,000 이상	50,000 이상	2,400 이상

- 주: 1.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의무별 수입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기장이 허용됨
- 2.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 기장의무별 수입금액에 미달하면 자기조정에 의한 세무신고허용됨
- 3.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수입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허용함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2) 장부기장 장려를 위한 조세지원

가)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²⁶⁾
 -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100만원 한도)함
- 다만, 다음과 같이 기장이 부정확·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 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현금영수증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²⁷⁾
 - 사업소득자가 국세청장에게 현금영수증사업소득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소득자로 승인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26) 「소득세법」 제56조의2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제상 혜택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개인사업소득자 등으로부터 2014년 말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소정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함²⁸⁾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부여됨
 - 동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임과 동시에 사업소득자의 소득 양성화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기도 함
- 신용카드 매출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가 있음²⁹⁾
 - 주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특정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6%로 한다)를 곱한 금액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9)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그 외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다)를 곱한 금액

라)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특례

- 일정 사업소득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대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³⁰⁾
 -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교부 사업소득자가 그 대상임

마) 성실사업소득자제도

-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를 통한 장부기장을 장려하고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에 최초 도입됨
 -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성실사업소득자 요건 및 세제혜택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내용은 본장의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에서 설명함

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소득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함³¹⁾
 - 단, 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 사업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30) 「소득세법」 제162조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함

-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³²⁾

3) 사업소득자의 장부기장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기장불성실 가산세

- 사업소득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장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³³⁾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됨
 -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³⁴⁾

3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함

33)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34)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및 제11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소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
 -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각각 5%

다) 사업용 계좌의 미사용·미신고 가산세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³⁵⁾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여됨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여됨

라)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소득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³⁶⁾

35)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36)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마)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소득자가 그 과세기간의 이듬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함³⁷⁾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

- 사업소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실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성실사업소득자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성실사업소득자제도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도입됨

1)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소득자 요건 및 혜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사업소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³⁸⁾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소득자(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가 없어야 함)이거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소득자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단,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37)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

38)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8

-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소득자는 일반사업소득자에 비하여 표준세액공제 5만원을 추가로 적용 받음
 -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일반 개인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인데, 일반사업소득자는 7만원, 성실사업소득자는 12만원이 적용됨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소득자 요건 및 혜택

-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소득자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소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소득자로 봄³⁹⁾
 -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이 경정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이 없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5년 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소득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됨
 - 다만,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소득자에 한해 적용됨

39)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표 II-5〉 성실사업소득자 자격요건 및 혜택

성실사업소득자 종류	요건	혜택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소득자’	1. 사업용계좌 신고 및 의무사용액의 2/3이상 사용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동시가맹 또는 ERP·POS 도입 3. 장부작성에 의한 소득세 신고	표준세액공제 인상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특법」상 ‘성실사업소득자’	1.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소득자’ 요건 모두 충족 2. 복식부기로 작성 3. 수입금액 증가요건 4. 3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5. 국세체납사실, 조세범처벌 사실 등이 없을 것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소득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상동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2. 소득세 공제제도

- 소득세 공제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세 공제 및 감면제도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개산인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수입금액이나 총급여, 총수령액에서 차감함
 -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됨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소득세 결정세액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그 밖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있음⁴⁰⁾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됨

1) 필요경비 공제

-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⁴¹⁾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금액은 장부에 의해 기장, 보관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진정한 부담능력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함
 -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개선으로 총급여액에서 공제됨으로써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실제로 공제하는 필요경비와 대응하는 개념임
 - 그러나 증빙서류에 의한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닌 총급여액의 수준에 비례하여 소득공제금액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이라 할 수 있음
- 근로소득공제는 곧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구성하게 되며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음

40)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와 같이 이중과세경감, 장부기장 장려, 납세순응 제고 등을 위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영위하는 사업에서 고려되는 세액공제는 본문에서 고려하지 않았음

4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표 II -6〉 근로소득공제(2014년)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 총급여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총급여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총급여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총급여의 2%

자료: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2)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데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차이는 없음
 -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70세 이상 경로, 장애인, 부녀자, 부양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함
 - 경로우대자 공제는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자녀장려세제의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⁴²⁾
 -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그리고 3명 이상은 연 30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4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0 제1항

〈표 II-7〉 인적공제 항목의 적용대상 범위

적용대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근로소득자	○	○	○	○	○	○
사업소득자	○	○	○	○	○	○
성실사업 소득자	○	○	○	○	○	○

3) 인적외 공제

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함⁴³⁾

(2)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상의 다음과 같은 특별소득공제는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납부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의 ‘근로소득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공제함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

43) 「소득세법」 제51조의3

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함⁴⁴⁾

-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일정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40%를 공제함
-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소득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3) 그 밖의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한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2015년 말까지 소정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액의 40%를 공제함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4년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정의 금액을 공제함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표 II-8〉 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별 적용대상 범위

적용대상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장기투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근로소득자	○	○	○	○	○	○
사업소득자	○	○				
성실사업소득자	○	○				

주: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소득자 경우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함

44)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 해당함

나)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임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임
 -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 대비 근로소득금액 비율로 계산됨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55%, 그리고 5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50~66만원으로 결정됨

〈표 II-9〉 근로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 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자료: 「소득세법」 제59조

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아래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

- 비, 교육비가 있으며 성실사업소득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의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해 12%를 세액공제함
 -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적격 의료비(700만원 한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일정 한도의 적격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단,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에 종합소득자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됨
- 적격 기부금의 15%(적격 기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원 초과 부분은 25%)를 세액공제함
- 다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각각 12만원과 7만원임
- 성실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12만원임
- 월세액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성실사업소득자도 신청가능함

〈표 II-10〉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적용대상 범위

적용대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근로소득자	○	○	○	○	○	12만원	○
사업소득자	○	-	-	-	○	7만원	
성실사업 소득자	○	-	○	○	○	12만원	○

주: 업무관련 보험료와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함

3. 소득세 통계

가. 일반현황

- 소득세 세무신고를 수행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비교하면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의 약 4배 정도임

〈표 II-11〉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비율)	근로소득자	14,046 (80.54)	14,295 (81.08)	15,177 (81.13)	15,540 (80.76)	15,768 (80.16)
	사업소득자	3,392 (19.46)	3,336 (18.92)	3,530 (18.87)	3,703 (19.24)	3,903 (19.84)

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상 국세통계만으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신고에 관련된 정보로 미비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비교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상 국세통계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 2008~2012년까지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액,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소득금액 신고액이 근로소득 신고액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함(〈표 II-12〉 참조)
 -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과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수준에서 살펴보면 총수입금액의 신고 금액은 총급여 신고 금액보다 평균적으로 약 1.74배정도 높은 수준임
 - 필요경비 수준에서 살펴보면 근로소득공제액은 평균적으로 총급여에 대하여 약 33.43% 수준이고,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약 91.19% 수준으로 높음
 -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신고금액보다 평균적으로 약 0.23배정도 낮은 수준임

〈표 II-12〉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율 비교(사업소득자 대비 근로소득자)⁴⁵⁾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소득자대비 근로소득자비율	총수입금액	1.73	1.74	1.78	1.79	1.68
	필요경비	4.25	4.71	4.97	5.09	4.84
	소득금액	0.23	0.23	0.23	0.23	0.23

자료: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 사업소득자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최고 97.96%(전기 · 가스 · 수도업)에서 최저 59.68%(부동산업)의 범위를 보이고 있음 (〈표 II-13〉 참조)
- 2012년 과세연도 현재 개인사업소득자의 업종별 분포는 〈표 II-14〉와 같으며,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45) 〈표 II-12〉의 산출근거가 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10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근로 소득자	총급여	352,638	361,466	396,289	433,267	466,685
	근로소득공제	131,411	121,600	129,680	138,699	146,986
	근로소득금액	221,227	239,866	266,609	294,568	319,699
사업 소득자	총수입금액	609,837	628,531	705,891	775,831	783,646
	필요경비	557,995	573,524	644,627	706,617	711,589
	사업소득금액	51,842	56,007	61,263	69,214	72,507

- 주: 1. 근로소득은 총급여(비과세제외)에서 필요경비적 개선공제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사업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2.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확정신고상의 근로소득금액 증감분 은 미반영됨

자료: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표 II-13〉 사업소득자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

(단위: %)

구분	연도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농·임·어업	96	95	97	운수·창고·통신업	92	92	92
광업	90	92	90	금융 및 보험업	91	92	93
제조업	94	93	93	부동산업	60	60	59
전기·가스·수도업	100	98	96	임대및사업서비스업	86	85	85
건설업	94	93	93	교육서비스업	90	89	89
도·소매업	96	96	96	보건(의료업)	76	75	76
음식·숙박업	93	93	93	기타	79	79	78

자료: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표 II-14〉 2012년 개인사업소득자 업종별 사업소득자 수 및 비율

(단위: 천명, %)

사업업종	사업소득자 수	비율
농·임·어업	55	1.0
광업	1	0.0
제조업	370	7.0
전기·가스·수도업	3	0.1
도매업	440	8.3
소매업	786	14.9
부동산매매업	10	0.2
건설업	283	5.4
음식업	828	11.9
숙박업	36	0.7
운수, 창고, 통신업	503	9.5
부동산임대업	1,195	22.6
대리, 중개, 도급업	46	0.9
서비스업	926	17.5
합 계	5,283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관련 사항

1)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

- OECD 보고서에 의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00년 36.8%, 2008년 31.3%, 2010년 28.8%, 2011년 28.3%로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으며,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6.1%임
 - 2010년 기준 미국, 호주, 캐나다는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0%, 11.6%, 9.5%임

[그림 II-3]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s)

(단위: %)



주: 총근로소득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자료: OECD FACEBOOK 2013, <http://dx.doi.org/10.1787/888932708579>

2)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중 가장 혜택이 큰 항목은 보험료공제이며, 그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순임

〈표 II-15〉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단위: 10억원)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보험료공제	14,453	15,304	16,564	19,070	21,045
의료비공제	5,506	5,502	5,786	6,399	6,879
교육비공제	8,323	9,500	9,933	9,901	9,350
주택자금공제	2,225	2,102	2,262	2,765	2,43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3,952	13,839	11,653	12,828	14,886
근로소득세액공제	2,427	2,295	2,576	2,830	3,089

주: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적용이 가능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3) 국세통계를 통한 사업소득자 현황 및 종합소득 신고현황 분석

- 총사업소득자에서 개인사업소득자의 비율은 법인사업소득자의 비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소득자 수는 2008년 4,730천명에서 2012년 5,283천명으로 증가함 (〈표 II-16〉 참조)
 - 간이과세자 기준점인 연 4,800만원으로 계속해서 고정되어 왔으므로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업소득자 수의 점진적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개인사업소득자 수의 증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소득자와 면세사업소득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⁴⁶⁾

46) 면세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소득자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소득자를 의미함.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간편한 법정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소득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소득자를 의미함

〈표 II-16〉 2008~2012년 사업소득자 수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법인사업소득자 수(비율)		505 (9.47)	529 (9.76)	557 (9.94)	595 (10.31)	635 (10.73)	
개인사업 소득자 수(비율)	「부가가치세 법」	일반과세자	2,633 (49.35)	2,664 (49.16)	2,832 (50.56)	2,977 (51.57)	3,081 (52.06)
		간이과세자	1,677 (31.43)	1,688 (31.15)	1,661 (29.66)	1,638 (28.37)	1,618 (27.34)
	「소득세법」	면세사업소득자	520 (9.75)	538 (9.93)	551 (9.84)	563 (9.75)	584 (9.87)
	소계		4,830 (90.53)	4,890 (90.24)	5,044 (90.06)	5,178 (89.69)	5,283 (89.27)
사업소득자 총수		5,335 (100)	5,419 (100)	5,601 (100)	5,773 (100)	5,918 (100)	

주: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자로서, 간편한 법정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소득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를, 면세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소득자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소득자중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소득자는 2008년 70.25%에서 2012년 73.88%로 증가함

〈표 II-17〉 개인사업소득자 대비 사업소득 신고자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소득 신고자 (A)	3,393	3,336	3,529	3,703	3,903
개인사업소득자(B)	4,830	4,890	5,044	5,178	5,283
개인사업소득자 대비 사업소득 신고자 비율(C=A/B×100)	70.25	68.22	69.96	71.51	73.88

자료: 『국세통계연보』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소득자는 2008년 3,393천명에서 2012년 3,903천명으로 약 13% 증가함(〈표 II-18〉 참조)

〈표 II-18〉 사업소득자 기장의무 형태별 사업소득 신고자 현황(「소득세법」상)

(단위: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기 장 의 무	복식 부기	기장신고 (비율)	738 (21.75)	790 (23.68)	829 (23.49)	915 (24.71)	994 (25.47)
		추계신고 (비율)	49 (1.44)	61 (1.83)	61 (1.73)	55 (1.49)	57 (1.46)
		소계 (비율)	797 (23.19)	851 (25.51)	890 (25.22)	970 (26.20)	1,051 (26.93)
	간편 장부	기장신고 (비율)	1,128 (33.24)	1,193 (35.76)	1,317 (37.32)	1,394 (37.65)	1,455 (37.28)
		추계신고 (비율)	1,478 (43.56)	1,292 (38.73)	1,322 (37.46)	1,339 (36.16)	1,397 (35.79)
		소계 (비율)	2,606 (76.81)	2,485 (74.49)	2,639 (74.78)	2,733 (73.81)	2,852 (73.07)
신고 합계		3,393 (100)	3,336 (100)	3,529 (100)	3,703 (100)	3,903 (100)	

주: 1. 신고현황의 “기장신고”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 자가조정, 성실납세방식, 성실신고확인)의 수와 간편장부 신고자의 수를 합산함

2. 신고현황의 “추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수를 합산함

3. 신고 합계는 총수입금액 신고 합계에서 비사업신고자의 신고를 차감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가)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와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신고현황

□ 〈표 II-18〉의 사업소득 신고현황에서 2012년 현재 사업소득 신고자에서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와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의 비중은 1 : 2.71로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높음

○ 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범위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자(법정 전문직 사업소득자 제외)는 수입금액, 필요경비, 고정자산 등에 대한 거래를 간편장부에 의해 장부를 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소득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함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비하여 작성이나 보관이 용이한 반면,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등 사업소득자가 행한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는 단점이 있음

-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의 비중은 2008년 대비 16.09%가 증가하고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는 약 4.86% 감소함(〈표 II-18〉 참조)⁴⁷⁾
 -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중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 비율이 2008년 23.19%, 2009년 25.51%, 2010년 25.22%, 2011년 26.20%, 2012년 26.9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 비율은 2008년 76.81%, 2009년 74.49%, 2010년 74.78%, 2011년 73.81%, 2012년 73.07%으로 감소함

- 기장의무자별로 다시 기장신고 및 추계신고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장신고에 의한 소득세 신고비중이 추계신고보다 증가함(〈표 II-18〉 참조)
 -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에 의한 기장신고의 비중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17.09%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추계신고는 2008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1.12%로 증가함
 - 2008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의한 기장신고의 비중과 추계신고 비중은 12.13% 증가하고, 17.83% 감소함

- 간편장부 대상자 비율의 감소는 당초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 결과 노출된 수입금액의 증가로 인한 기존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 전환에 따라 나타났다고 판단되며, 간편장부 대상자 자체 비율의 감소는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의 비율 감소에 주요한 요인임

- 개인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신고 비율의 증가와 함께 기장에 의한 사업소득의 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현황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47) 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장과 보관의무가 있으나 법정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간편장부대상자(법정 전문직 사업소득자 제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범위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동법 동영 제147조의3). 자세한 내용은 앞장의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편을 참조할 것

수 있음

- 그러나 한편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에 의한 추계신고 비율의 증가와 함께 개인 사업 소득자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상은 사업소득 신고 및 장부기장 실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나)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의한 사업소득 신고현황

- 장부의 기장에 의한 신고 비중을 <표 II-19>에서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12년에는 12.40% 증가하고 추계신고 비중은 20.8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기장에 의한 사업신고가 증가함⁴⁸⁾
 - 신고현황별 기장신고 비중은 2008년 54.97%, 2009년 59.44%, 2010년 60.81%, 2011년 62.36%, 2012년 62.75%이고
 -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45.03%, 40.56%, 39.19%, 37.65%, 그리고 37.25%임

<표 II-19>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별 사업소득 신고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장신고	1,865 (54.97)	1,983 (59.44)	2,146 (60.81)	2,309 (62.36)	2,449 (62.75)
추계신고	1,528 (45.03)	1,353 (40.56)	1,383 (39.19)	1,394 (37.65)	1,454 (37.25)
신고 합계	3,393 (100)	3,336 (100)	3,529 (100)	3,703 (100)	3,903 (100)

자료 : 『국세통계연보』

- 기장신고에 의한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다시 외부조정, 자가조정, 성실신고확인에 의한 신고 등의 복식부기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으로 구분하여 <표 II-20>에서 살펴봄

48)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의 구비 없이 법정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방식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본절 다항 1)의 “사) 추계 신고를 위한 경비율제도” 편을 참조할 것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는 2010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5.19% 증가한데 반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는 4.68% 감소함
 - 그러나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에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의한 성실신고비율은 2012년 현재 2.7%로 아직 그 비중이 크지 않음

〈표 II-20〉 사업소득자 기장신고 상세현황

(단위: 천명, %)

구분	복식부기			간편장부	합계	
	외부조정	자가조정	성실신고확인			
2010년	사업소득자 수 (비율)	874 (40.74)	122 (5.69)	- (0)	1,149 (53.67)	2,145 (100)
2011년	사업소득자 수 (비율)	891 (38.59)	139 (6.02)	71 (3.07)	1,208 (52.32)	2,309 (100)
2012년	사업소득자 수 (비율)	974 (39.77)	156 (6.37)	66 (2.70)	1,253 (51.16)	2,449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

- 추계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증가율이 3.85%인데 반하여 단순경비율의 경우는 5.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4.75% 증가함(〈표 II-21〉참조)⁴⁹⁾
 - 추계신고 중에서 복식부기의무 사업소득자의 비중은 2008년 1.44%에서 2012년 1.46%로 증가하고,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의 비중은 2008년 43.56%에서 2012년 35.79%로 감소함(〈표 II-18〉 참조)

49)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 해주는 등 단순경비율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표 II-21〉 사업소득자 추계신고 상세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추계신고		합계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2010년	사업소득자 수 (비율)	450 (32.51)	934 (57.49)	1,384 (100)
2011년	사업소득자 수 (비율)	452 (32.31)	947 (69.69)	1,399 (100)
2012년	사업소득자 수 (비율)	468 (32.21)	985 (69.79)	1,453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

다) 세무조사 소득세 결정액 및 기장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등

-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정할 탈루세액은 2012년 현재 약 8,570억 수준으로 2008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음(〈표 II-22〉참조)
 - 당초 신고세액 대비 추정세액 비율 역시 2008년 3.5%에서 2012년 4.8%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 II-22〉 세무조사에 의한 소득세 결정

(단위: 10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결정 소득금액	2,389	1,630	2,063	2,238	2,550
부과세액(A)	424	477	518	717	857
자진신고세액(B)	11,725	11,699	13,178	15,171	16,901
추정세액 비율(A/(A+B))	3.5	3.9	3.8	4.5	4.8

자료: 『국세통계연보』

- 사업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세무상 납세의무 중 적격증빙 수취, 장부기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부과되는 가산세 실적은 〈표 II-23〉과 같음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약간씩 증가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일정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무기장가산세는 자가신고의 경우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

는 증가하고 있음

〈표 II-23〉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

(단위: 10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빙불비	자가신고	3	2	2	13	11
	결정, 경정	7	9	9	11	17
	합계	10	11	11	24	28
무기장	자가신고	61	53	60	53	49
	결정, 경정	21	32	32	31	39
	합계	82	85	92	84	88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정발급	자가신고	-	-	-	-	-
	결정, 경정	1	2	1	1	1
	합계	1	2	1	1	1

자료: 『국세통계연보』

Ⅲ. 주요국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소득세 공제제도와 소득세 관련 통계

1. 미국

가. 소득세 과세체계

1) 개요

가) 과세소득

- 미국에서는 시민권자(citizens) 및 거주자(residents)에 대하여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 소득의 원천 및 형태를 불문하는 완전 포괄주의 개념임⁵⁰⁾

-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일부 배당소득은 별도의 '특별세율(special tax rates)'을 적용받으며, 나머지 소득은 모두 합쳐서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며 10~39.6%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음
 - 통상소득의 예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음

- 결혼 유무 및 '개별 또는 합산신고' 등에 의해 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개별신고(separate tax returns)' 및 '부부합산신고(joint tax returns)'가 있는데, 납세자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 부부 각자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인적소득공제(personal exemption allowances)',

50) Reg. § 1.1-1(b)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적용 수준 및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부가 납부할 소득세 총액이 달라짐

- 부양가족이 있는 외별이 부부인 경우 ‘가정 신고(heads of households)’, 독신인 경우 ‘개별신고(single)’가 있음

나) 과세소득 신고제도

- 미국의 모든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소득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기한 내 소득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⁵¹⁾
- 산출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39.6%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임
 - 미혼과 기혼, 세대주 등 신고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차이가 있음

〈표 Ⅲ-1〉 미국 연방 소득세율(2014년)

단독신고		부부합산, 자격미망인		세대주신고		세율(%)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0	9,075	0	18,150	0	12,950	10
9,076	36,900	18,151	73,800	12,951	49,400	15
36,901	89,350	73,801	148,850	49,401	127,550	25
89,351	186,350	148,851	226,850	127,551	206,600	28
186,351	405,100	226,851	405,100	206,601	405,100	33
405,101	406,750	405,100	457,600	405,100	432,200	35
406,751	-	457,601	-	432,201	-	39.6

자료: IRS

- 소득세 세무신고의 과세기간은 역년이며 신고기한은 당해 연도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임

51) 일반적으로 세무신고 양식인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를 이용해서 신고함

○ 세무신고 신고기한의 연장은 과세관청의 승인 하에 허용되나 납부기한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음

□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는 분기별 소득세 중간예납 (estimated tax)의무가 있음⁵²⁾

○ 분기별 납부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임

다) 원천징수제도

□ 미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임금소득, 5,000천달러 이상의 특정 도박소득 등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거주자의 투자, 임대, 자영업, 로열티,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독립계약자 등에게 600달러 이상을 지급하면, 신고서(Form 1099-MISC)상 신고 대상이 됨

– 은행이나 사업체가 이자나 배당, 임대료, 로열티, 커미션을 지급할 때 사회보장번호 등 납세자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 28%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비거주 외국인은 임대소득, 로열티, 커미션, 월급, 임금, 연부금, 보상,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됨

□ 미국 연방정부, 대다수의 주정부와 일부 지방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및 건강보험세를 징수하고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 고용주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사회보장세·건강보험세·고용보험과 주별로 부과하는 세금의 원천징수, 예치,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연중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조정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함

52) IRS(2014), p.23

-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소득공제액(withholding allowances)을 차감하고 계산함

라)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

- 사업소득자는 현금주의 방식, 발생주의 방식,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에 의한 회계처리에 의한 장부기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을 결정함⁵³⁾
 - 현금주의 회계처리란 납세자가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때가 아닌 수입과 지출을 실제 혹은 실질적으로 수령 또는 지급했을 때 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함
 - 발생주의 회계처리란 일정 사건이 발생하고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함
 - 일단 한 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의 허가 없이 회계방식을 바꿀 수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이 국세청이 보기에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회계방식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수표제도가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에서는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수표에 기초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개인 영세사업소득자들은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함
- 단, 다음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현금주의 회계방식 적용이 불가능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하여야 함⁵⁴⁾
 - 이전 3년간 총수입이 연 100만달러(납세자의 주된 영업이 재고판매가 아니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소득자
 - C 법인(C corporation), 주식회사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조세피난처(tax shelter),

53) IRC Sec. 446(a)

54) Reg. Sec. 1.446-1(c)(2)(i)

일부 기금 등

- 일부 개인서비스 회사와 농장 그리고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하의 실체는 이러한 요건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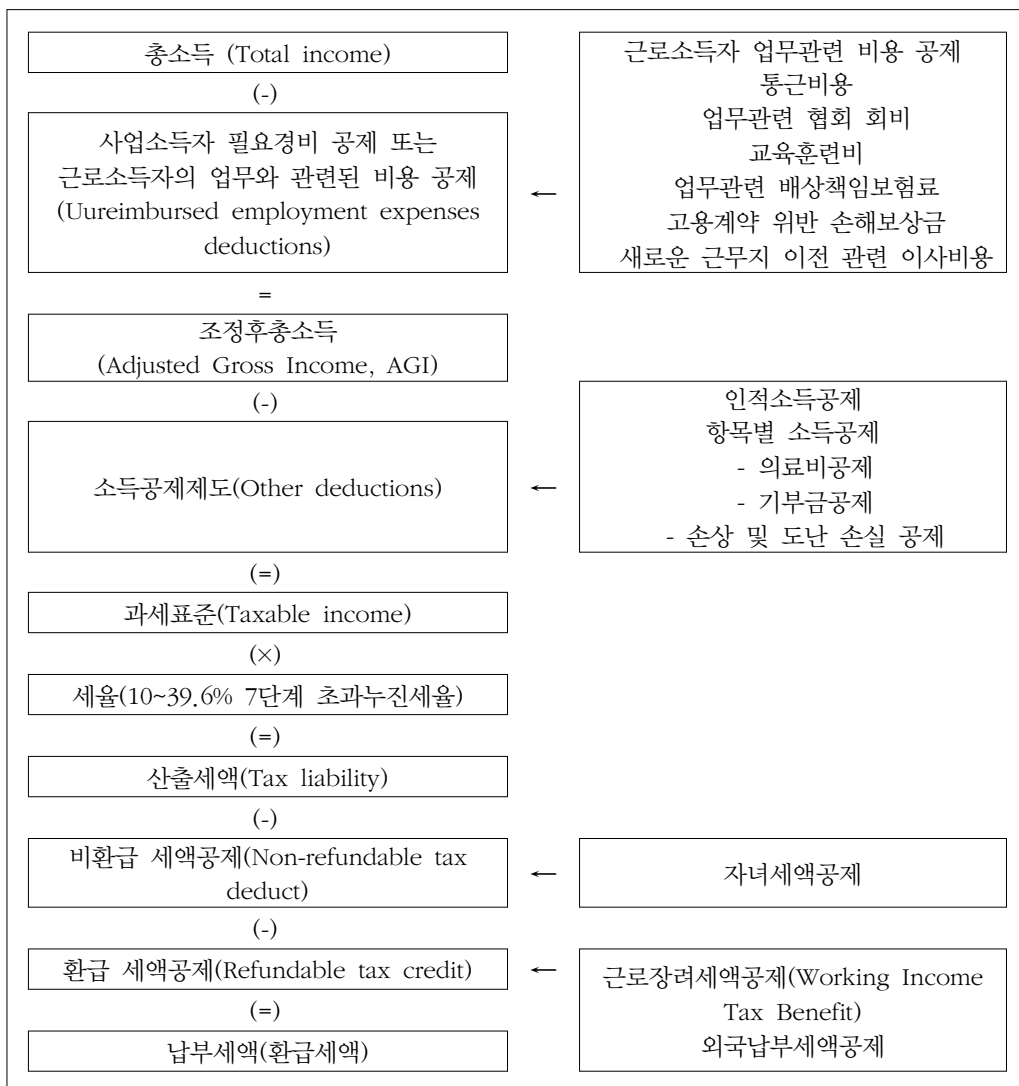
- 한편, 소득세 결정과 관련 있는 장부 및 각종 증빙들의 의무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임
 - 다만, 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처분에 따른 이득이나 손실 등과 관련한 자료에는 3년보다 더 긴 의무보관기간이 요구될 수 있음

2) 세액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 기본적으로 개인의 총소득(gross income)에서 허용된 공제(allowances and deductions)를 차감한 순소득에 과세하는 구조로서, 과세표준(taxable income) 산정시까지 다음 세 단계를 거침
 - 제1단계: 총소득(gross income)의 계산
 - 제2단계: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계산
 - 제3단계: 과세표준의 계산
 - 조정총소득에서 인적소득공제와 항목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총소득(gross income)은 근로, 사업, 투자, 연금 등 소득원천을 불문한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며, 총수입에서 직접 대응되는 원가(cost)를 차감하여 계산함
 - 임대료, 로열티, 이혼 및 별거로 인한 수령액, 생명보험으로부터의 보험금 수령액, 채무면제이익 등도 총소득의 범주에 속함
 - 총소득은 총수입(revenue) 또는 총매출액(sales)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및 투자수익금에서 관련원가(cost)를 차감하여 산정함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은 총소득에서 사업 관련 비용(trade or business deductions)이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보전받지 않은 근로 업무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함

○ 이외에도 자산의 양도, 교환에 의한 손실, 자영업자(self-employment individual)의 연금 기여금, 개인퇴직계좌(regular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기여금, 이혼 및 별거에 따른 지급액, 적격 교육비(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적격 의료저축계좌(qualified health savings account) 기여금 등의 공제항목이 있음

[그림 Ⅲ-1] 미국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자료: IRS

- 과세표준(taxable income)은 조정총소득에서 i) 인적소득공제(personal exemption amounts)와 ii)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차감하여 산정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환급성(refundable) 세액공제 및 비환급성(non-refundable)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함⁵⁵⁾
 - 환급성 세액공제에는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등이 있고, 비환급성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교육비용세액공제(educational expense tax credit) 등이 있음

- 납세자(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면세점을 구하기 위한 2014년 현재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공제제도로는 기본공제(표준공제, 면세점공제), 인적공제,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있음
 - 기본공제는 표준공제와 면세점공제로 구성되는데 표준공제는 개인 6,200달러, 부부합산시 12,400달러가 적용함
 - 면세점공제는 모든 납세자(합산시 부부 각각에 적용)에 3,950달러씩 적용
 - 인적공제인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3,950달러씩 적용됨
 - 저소득층(무자녀 개인의 경우 14,340달러, 자녀 2인 부부는 48,378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액공제(최대 세액공제액은 무자녀 개인의 경우 487달러, 자녀 2인 부부는 5,372달러)가 적용함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00달러가 제공되며 소득이 개인 75,000달러, 부부 110,000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의 5%씩 감액됨

55)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반해 환급성 세액공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해주는 것임

나. 소득세 공제제도

- 필요경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거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성실사업소득자’에 상응하는 개념이 별도로 없음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비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 모든 납세자는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개인 면세점 공제액,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모든 납세자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가정살림 및 부양가족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household and dependent care services tax credit)’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됨

1) 필요경비 공제(Deduction)

-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소득세 부담세액 산출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 근로소득자란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적인 인적용역(dependent personal services)을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주로부터 임금(wages), 성과급(commissions), 수수료(fees), 봉사료(tips), 상여금(bonuses) 등의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함
 - 사업소득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자영업자(self-employment individual)와 변호사·건축가·회계사 등의 독립적 전문 인적용역 제공자(professional)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세제 적용에 있어서 구분의 실익은 없음
 - 개인에 의해 설립된 1인 소유주 법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소득, 파트너십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기타 도관회사의 사원으로서 간접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됨⁵⁶⁾

56) 도관으로서 법인단계가 아닌 개인단계에서 과세되는 것들로는, S법인(subchapter S corporations), 인적용역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s) 등이 있음

- 근로소득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는 해당 경비를 고용주로부터 상환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됨
 - 세무상 적격 규정(qualified accountable plan)에 따라 업무 관련 비용을 고용주가 보전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되고 관련 비용도 공제되지 않음⁵⁷⁾

- 근로소득자는 근로 업무에 꼭 필요하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는 다음의 비용들이 공제 대상이 됨⁵⁸⁾
 - 일상적인 통근비용이 아닌 회사의 기구나 장비 등을 동반하여 통근하는 경우의 통근비용
 - 개인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게 하여 발생한 비용
 - 업무와 관련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여비교통비 및 출장비
 - 업무와 관련 있는 고객을 위한 식비, 유흥비 등의 접대비
 - 자택근무시의 홈 오피스 운영유지비용
 -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소득자 조직 단체에 내는 비용
 - 기술향상, 고용계약 유지, 연봉인상 등을 위한 교육비용
 - 새로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보험료
 - 고용 계약의 위반에 대한 전 고용주에게 지급 손해

- 근로소득자 업무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항목별공제 금액과 합해서 그 공제한도가 결정됨
 -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자 업무관련 비용은 기타 항목별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와 함께 그 과세연도의 조정총소득의 2%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조정총소득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소득상위층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와 함께 총한도 규제 규정에 의해 그 공제를 제한받음

57) Reg. § 1.62-2(c)(4) and -2(h)(1)(i)

58) http://www.irs.gov/publications/p529/ar02.html#en_US_2013_publink100026912

- 사업소득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통상적인 비용, 예를 들면 인건비, 이자 비용, 로열티,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필요경비 공제시 납세자는 국세청 신고의무가 있으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함

2) 소득공제

-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지급액(alimony payments) 공제’, ‘교육비용(education expenses) 공제’ 등이 있으며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지급액 공제’는 반대편 배우자가 당해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만 적용됨
 - 교육비용 공제는 해당 개인 및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등록금, 수강료 등의 적격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며, 개별신고 기준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GI)’ 6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최대 4,000달러, 65,000~80,000달러의 개인에게는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함
 - 다만, 동 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 문제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임
-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조정총소득에서 인적소득공제(personal exemption allowance),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공제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차등이 없음
 - 인적소득공제는 본인, 배우자, 19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며, 2014년 기준 현재 인당 3,950달러가 적용되나 특정 조정총소득 임계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감소됨
 - 표준공제와 항목별 소득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받음
 - 표준공제는 신고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부부합산 신고 시 12,400달러, 개별 신고 시 6,200달러임

- 항목별공제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적격 의료비에 대한 공제로서 조정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한도는 가족 전체 기준 2,500달러임
 - 적격 의료비에는 의료저축계좌 기여금, 건강 보험료 등도 포함됨
 - 기부금 공제: 공공 자선단체 및 정부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총소득의 50%, 기타 적격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총소득의 30%까지 공제해 줌
 - 이밖에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공제, 재난 또는 도난 등에 의한 손실 공제, 소득창출 및 유지를 위한 비용 공제, 적격주택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등이 있음

- 기타 항목별 소득공제(miscellaneous deductions)에 대해서는 조정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함
 - 기타 항목별 소득공제란 항목별 공제제도 중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적격주택 이자비용 공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세금 공제, 재난 또는 도난 손실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별 공제를 말함

- 조정총소득이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항목별 공제의 총한도 규정이 적용됨
 - 2014년 기준 금액은 부부합산신고기준 305,050달러, 개별신고기준 152,525달러임
 -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조정총소득 금액의 3%와 항목별 공제액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게 됨

3) 세액공제(tax credit)

- 세액공제 단계에서는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와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가 있으며, 대부분 그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가정살림 및 부양가족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household and dependent care services tax credit)’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됨

- 환급성 세액공제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와 건강보험세액공제(health insurance credit)가 있음
 - 근로장려세액공제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현재 ‘적격한 자녀(qualifying children)’의 수(무자녀 또는 1명이상), 소득신고 형태(개별신고, 부부합산신고), 신고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크기가 달라짐
 - 무자녀 가정의 경우 기준금액은 14,590달러이고 최대의 세액공제액은 490달러 수준임
 - 건강보험세액공제의 대상은 무역법(Trade Act)에 따라 수입물품으로 인해 실직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실직자 등으로서 그와 그 가족의 적격보험 비용의 7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임

- 비환급성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가정살림 및 부양가족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household and dependent care services tax credit), 교육비용세액공제(education expense tax credit) 등이 있음
 - 자녀세액공제는 17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자녀당 1천달러를 공제해 주며,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GI)이 특정 임계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축소됨
 - 현재 임계점은 부부합산기준 110,000달러, 개별기준 775,000달러임
 - 가정살림 및 부양가족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가정살림 및 12세 이하의 아동 돌봄을 위해 지불한 비용의 3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임
 - 조정총소득이 15,000달러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축소되며, 자녀 1인당 일정 한도를 부여함
 - 교육비용세액공제는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hope scholarship credit)와 평생교육 관련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가 있음
 -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적격 대학교육기관에 지출한 등록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1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지원해 주며, 부부합산기준 조정총소득 160,000달러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혜택 축

소함

- 평생교육 관련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의 적격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금 등의 20%를 공제해 주며, 최대 1만달러까지 지원해 줌
- 이밖에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노인 및 장애인 세액공제(credit for elderly and/or permanently disabled), 입양비용세액공제(credit for adoption expenses),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세액공제(credit for interest on home mortgages) 등이 있음

다. 소득세 통계

1) 소득세 신고 일반

- 미국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조정총소득은 8조달러, 결정세액은 1조달러 수준에 이르며, 구체적 내용은 <표 III-2>와 같음
- 미국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s) 및 일부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통상 소득(ordinary income)으로서 과세되며, 납세자는 소득 및 세액을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표 III-2> 2007~2011년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10억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정총소득	8,688	8,263	7,626	8,089	8,374
항목별공제 등 각종 공제	2,625	2,610	2,538	2,587	2,817
과세표준	6,063	6,053	5,088	5,502	5,557
산출세액	1,180	1,107	976	1,066	1,120
각종 세액공제	64	75	110	114	74
결정세액	1,116	1,032	866	952	1,046

자료: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62.28% 정도이며, 과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의무자는 평균적으로 37.72%임

〈표 Ⅲ-3〉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 납세자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액 납부자	해당자	96,273	90,660	81,890	84,476	91,643
	(비율)	(67.33)	(63.64)	(58.29)	(59.12)	(63.04)
세액 미납부자	해당자	46,706	51,791	58,604	58,416	53,727
	(비율)	(32.67)	(36.35)	(41.71)	(40.88)	(36.95)
소득세 신고자 합계	총신고자	142,979	142,451	140,494	142,892	145,370
	(비율)	(100)	(100)	(100)	(100)	(100)

자료: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2)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관련 사항

- 통상소득을 신고한 납세자 중 근로소득(salaries and wages) 및 사업소득(business and professional)을 신고한 납세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근로소득 신고건수는 사업소득 신고건수의 약 5.29배 정도임

〈표 Ⅲ-4〉 2007~2011년 신고자 수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근로소득	신고자	120,845	119,579	116,669	117,820	119,560
	상대비율	84.23	84.39	84.07	83.96	83.92
사업소득	신고자(일반)	16,932	16,434	16,539	17,008	17,361
	신고자(결손)	5,696	5,677	5,572	5,497	5,557
	신고자 합계	22,628	22,111	22,111	22,505	22,917
	상대비율	15.77	15.61	15.93	16.04	16.08

자료: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 <표 Ⅲ-5>의 신고된 조정총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71.71%, 3.27%이며 근로소득의 비중이 사업소득보다 큼

<표 Ⅲ-5> 소득원천별 소득금액 및 비율

(단위: 10억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근로소득	금액	5,842	5,951	5,707	5,837	6,055
	(비율)	(67.24)	(72.02)	(74.84)	(72.16)	(72.31)
사업소득	금액	280	264	246	268	283
	(비율)	(3.22)	(3.20)	(3.22)	(3.31)	(3.38)
그 밖의 소득	금액	2,566	2,048	1,673	1,984	2,036
	(비율)	(29.54)	(24.78)	(21.94)	(24.53)	(24.31)
조정총소득 합계	금액	8,688	8,263	7,626	8,089	8,374
	(비율)	(100)	(100)	(100)	(100)	(100)

자료: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2. 캐나다

가. 소득세 과세체계

1) 개요

가) 과세소득

- 거주자(Resident)는 각 원천별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에는 캐나다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사업(business), 자산(property), 직무(office), 고용관계(employment)의 각 원천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연방 소득세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

나) 과세소득 신고제도

-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무신고의 과세연도는 역년(曆年)이며,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임
 - 단,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이 허용됨⁵⁹⁾
- 캐나다 연방 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최소 15%~최대 29%의 누진세율구조임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
 - 각 주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를 고려하는 경우 최고세율은 39~50%임⁶⁰⁾

〈표 Ⅲ-6〉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율체계

(단위: 캐나다달러, %)

과세표준	연방 소득세율
0~43,952 이하	15
43,953 이상 ~ 87,907 미만	22
87,908 이상 ~ 136,270 미만	26
136,270 이상	29

자료: CCH(2014), p.vii.

-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는 분기별 소득세 중간예납(quarterly installment payments) 의무가 있음⁶¹⁾
 - 분기별 중간예납 납부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임
 - 단,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2개년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 모두 소득세 납부세액 과 원천징수세액이 3,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⁶²⁾
- 현행 소득세제로 인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 및 소요시간이 매우 높다는 비

59) Ernst&Young(2013), p. 205

60) Ernst&Young(2013), pp. 98~104

61) Gutiérrez P., C. et al. (eds), p. 99

62) Ernst&Young(2013), p. 205

판이 있음⁶³⁾

- 캐나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및 환경을 반영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도인 세액공제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 인하여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음

다) 원천징수제도

- 캐나다는 근로소득 이외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임금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⁶⁴⁾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연방 소득세 세무신고를 통해 조정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⁶⁵⁾
 -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됨
 - 캐나다 내 원천을 두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됨
 - 단,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의 경우 15%, 영화나 비디오 관련 용역을 수행한 비거주자 배우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23%의 세율을 적용함

63) Sean Speer · Milagros Palacios · Marco Lugo · Francois Vaillancourt(2014), p. 3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캐나다 납세자가 지출한 납세협력비용(personal tax compliance cost)은 약 58.4 ~ 69.6억캐나다달러로 캐나다 한 세대(household)당 약 501캐나다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을 의미함

64) Gutiérrez P., C. et al. (eds), p.98

65) Gutiérrez P., C. et al. (eds), p.102

라)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

- 납세자는 소득세 세무신고로 보고되는 과세소득 및 납부세액의 산출과 관련된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⁶⁶⁾
 - 일반적으로 비용 공제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는 최소 6년간 보관하여야 함⁶⁷⁾
 - 납세자가 장부·증빙서류 유지 및 보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최소 1,000캐나다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⁶⁸⁾

2) 세액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 총수입(total income)에서 수입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총수입은 사업(business), 자산(property), 직무(office), 고용관계(employment)의 각 원천별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계상함
 - 사업 관련 발생 필요경비를 총수입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업무 비용을 총급여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자 업무 비용은 근로제공과 관련 특정 업무 비용으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개별 소득에는 귀속시킬 수 없지만 담세력이나 조세특례의 목적으로 세무목적상 공제가 허용되는 소득공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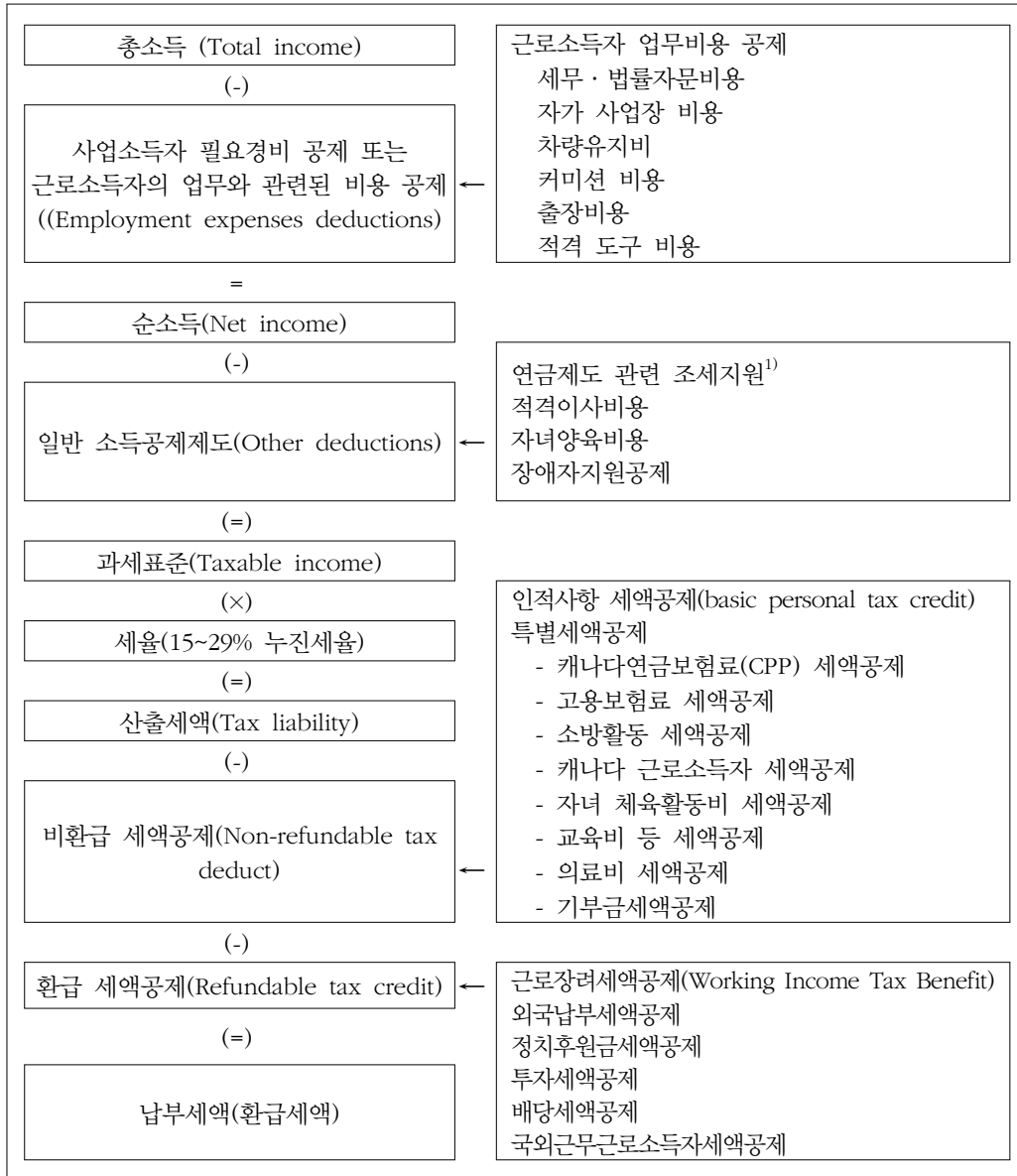
- 과세표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방소득세액을 산출함

66) Income Tax Act s 230, s 230.1

67) CAR(2010), p.3

68) CAR(2010), p.5

[그림 Ⅲ-2] 캐나다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주: 1) 연금제도 관련 조세지원은 캐나다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자료: CRA(2013b), 이준봉(2013)

나. 소득세 공제제도

1) 필요경비 공제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창출활동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는 업무관련을 고려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하여 제한적인 공제를 허용함
- 근로소득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특정 비용항목들은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단, 근로소득자 비용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증빙서류의 구비 및 장부기장(daily record of expenses)의 의무와 6년간 장부 등 보관의무가 있음⁶⁹⁾
- 근로소득자 비용공제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비(supplies), 직업 관련 회비(professional membership or union dues), 세무·법률자문비용(accounting and legal fee) 등이 있음
 - 이 경우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에 의하여 업무 관련 비용의 부담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자 업무 관련 비용의 공제 신청에 대한 고용주의 확인이 있어야 함⁷⁰⁾
- 자가 사업장 비용(Work-space-in-the-home expenses)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거(home)를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허용됨⁷¹⁾

69) CRA(2013a), p.5. 증빙서류의 예시로는 영수증이나 취소된 수표(cancelled cheques), 출장 관련 차표(ticket stubs for travel), 청구서(invoice), 신용카드 명세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한 자동차 사용기록(kilometers)가 있음.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매입과 관련된 증빙서류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대한 서류(구입일, 공급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 납세자 본인의 성명, 주소,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용 등 기재되어야 함

70) 소득세 세무신고서 별도 서식인 Form T2200 고용계약 조건신고서(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상에 고용주의 직인이 있어야 함

71) CRA(2013a), p.10

- ① 근로소득자 주거를 사업장(work space)을 주로 사용하여야 하며, ② 근로소득의 획득을 위한 거래처나 고객의 대응이 근로소득자의 주거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근로소득자 업무 관련 비용의 공제 신청에 대한 고용주의 확인이 있어야 함
- 자가 사업장 비용에는 전기료, 냉난방비, 유지비, 재산세, 주택보험료 등 포함되나, 주택 취득원가에 대한 감가상각, 주택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제외됨
- 차량유지비(allowable motor vehicle expenses) 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근로제공을 위한 업무를 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음
 - ① 고용계약상 차량 관련 비용의 부담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으며, ② 고용주 사업장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③ 차량 비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실비 변상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고, ④ 근로소득자 업무 관련 비용의 공제 신청에 대한 고용주의 확인이 있어야 함
 - 해당 비용에는 유류대, 운전면허증 관련 수수료,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운용비용과 근로소득자가 차량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원가에 대한 감가상각, 지방세, 금융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비용에 포함됨
 - 차량유지비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차량운행기록, 관련 증빙서류, 관련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기장의무가 있음⁷²⁾

〈표 III-7〉 차량유지비 공제 한도액

구분	자가 소유	임대 차량
차량 유지 비용	운용비용(실제발생액) 감가상각(연 30,000달러 한도) 이자비용(일 10캐나다달러 한도)	운용비용(실제발생액) 법정 임대비용(800캐나다달러 한도)
한도	{{(①+②+③)}×(업무수행주행거리비율)}	{{(①+②)}×(업무수행주행거리비율)}

자료: <http://en.planiguide.ca/tax-planning-guide/section-5-employees/employment-expenses/#motor-vehicle-expenses>

72) CAR(2013a), p.17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유형별로 공제가 허용되는 특정 비용항목이 있으며 근로소득자 유형별은 아래와 같음

- ① 영업직 종사자(employees earning commission income)
- ② 사무직 종사자(employees earning a salary)
- ③ 여객운송업 종사자(Transportation employees)
- ④ 산림업 종사자(employees working in forestry operations)
- ⑤ 아티스트(employed artists)
- ⑥ 기능직 종사자(employed tradespersons)

(1) 영업직 종사자

근로소득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수료 수입 (commission income)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수수료 비용으로는 광고 및 판매촉진비, 식대 및 접대비(Food, beverages, and entertainment expenses), 숙박비(lodging), 주차비, 교육훈련비(training costs) 등이 있음

○ 식대 및 접대비는 12시간 연속으로 고용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식비나 거래처의 접대를 위하여 지출한 음식, 음료수, 오락이나 경기장 표 등 접대비는 그 비용의 50%를 한도로 하여 공제할 수 있음⁷³⁾

○ 숙박비(lodging)와 주차비(parking)는 고용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출장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임

○ 교육훈련비는 근로제공과 관련된 근로소득자의 현재 기술 및 자격사항의 유지,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에 한함

수수료 수입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⁷⁴⁾

73) 50% 한도규정이라 함. 50% 한도규정은 항공, 철도, 버스를 이용한 출장 중에 운임이나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음료, 그리고 접대비 관련 비용에 적용됨

74) CRA(2013a), p.5

- ① 고용계약에 의하여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으며, ② 항시 고용주 사업장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 총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판매 상품 또는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④ 근로소득자 업무 관련 비용의 공제 신청에 대한 고용주의 확인이 있어야 함
- 영업직 근로소득자는 사무직 근로소득자(salary employee) 비용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을 제외함
 - 출장비용(식대와 숙박비 포함), 차량운반구 관련 비용(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포함), 소모품이나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특정 비용들에 대하여 비용 공제가 수수료 수입금액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공제될 수 있음

〈표 Ⅲ-8〉 영업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자 비용 공제 예시

(단위: 캐나다달러)

오디오 영업판매 근로소득자의 2013년 과세연도 수입과 비용은 다음과 같음

수입

급여(salary)	25,000
수수료 수입(Commissions received)	5,000
총급여액(Total employment income)	30,000

비용

광고비	1,000
출장비용	6,000
자가 소유 차량 감가상각(업무사용)	1,500
차량 구입관련 차입금이자	500
비용합계	9,000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인 7,000캐나다달러는 수수료 수입 5,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함. 이 경우 차량 관련 비용과 한도 이내 수수료 비용 5,000캐나다달러만 근로소득자 비용의 합계인 7,000캐나다달러가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함
사무직 근로소득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광고비 1,000캐나다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함

자료: CAR(2013a), p.5

(2) 사무직 근로소득자(employees earning a salary)

- 사무직 근로소득자는 차량유지비, 출장비용, 주차비, 소모품비 등을 근로소득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단, 기본적으로 ① 고용계약상 비용 관련된 부담이 근로소득자에게 있고, ② 근로소득자 업무 관련 비용의 공제 신청에 대한 고용주의 확인이 있어야 함

- 출장비용(travelling expenses)에는 식대, 음료수, 숙박비용을 포함하지만,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은 제외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비용으로 공제 가능함
 - 위 조건에 추가적으로 ① 고용주 사업장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② 출장비용과 관련하여 고용주로부터 관련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수령하지 않아야 함

(3) 기능직 근로소득자(employed tradespersons)

-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능⁷⁵⁾직 근로소득자의 적격 도구나 기자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
 - 단, ① 도구나 기자재는 기능직 근로소득자로서의 작업수행 목적으로 구입되어야 하고, ② 고용주는 그 도구 등이 기능직 근로소득자로서의 작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증명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용되는 핸드폰이나 계산기 등은 적용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비용 공제한 도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조정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소득으로 가산하여야 함

75) CRA(2013a), p.14

〈표 Ⅲ-9〉 기능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자 비용 공제 예시

2013년 전기 기능직 근로소득자가 작업수행을 기자재를 구입하고 2,500캐나다달러를 지출함.
2013년 전기 기능직 근로소득자로서의 총급여액은 45,000캐나다달러임

적격 도구 필요경비 공제 한도액

Min{ a) CAD500

b) $A - CAD1,117 = CAD1,383$

여기서 A는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함

$A = \min$ [① 도구 취득가액, ② 기능직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 \min$ [① CAD2,500, ② CAD45,000]

$= CAD2,500$

2013년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한 적격 도구 비용 공제액은 500캐나다달러임

자료: CAR(2013a), p.15

(4) 근로소득자 부담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환급

- 근로소득자 비용 공제가 적용된 특정 비용금액에 GST/HST가 포함된 경우로 고용주가 GST/HST 사업등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부담 GST/HST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단, 특정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됨
- 근로소득자 부담 GST/HST 환급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으로 포함함

2) 소득공제

- 개별 소득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금제도 관련 조세지원, 적격 이사비용(eligible moving expenses)소득공제, 자녀양육비(child care expense)소득공제, 장애자지원소득공제(disability support deduction)가 있음⁷⁶⁾
 - 적격 이사비용은 납세자가 근로제공, 사업영위, 고등교육과정 학생의 학업목적으로

76) 이준봉(2013), pp.1154~1160

최소 40킬로미터 이상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을 때 공제 가능함

- 자녀양육비 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자녀가 있을 때 일정범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함
- 장애인지원소득공제는 장애인 납세자가 근로제공, 사업영위, 학업수행시 지출한 보조 장비(assistive device)나 지원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3) 세액공제(tax credit)

- 연방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와 환급이나 차기연도로 이월이 가능한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가)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

- 비환급성 세액공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항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III-18>과 같음⁷⁷⁾
- 캐나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Canada employment amount tax credit)⁷⁸⁾
 - 소득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업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세액공제임
 - 근로소득에 대하여 15%의 단일세율이 적용하며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1,127캐나다달러(2013년 1,117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함⁷⁹⁾

77) 인적사항세액공제에는 본인 기본세액공제, 배우자 세액공제, 장애세액공제, 피부양자 장애 세액공제, 가족 요양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경로자 세액공제가 있음

78) Income Tax Act s. 118(10)

79) CCH(2012), p.689

〈표 Ⅲ-10〉 연방 「소득세법」상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및 최대세액공제한도액(2014)
(단위: 캐나다달러, %)

구 분		기본금액(①)	최대세액공제한도액 (①×15%)
인적기본(Basic)		11,138	1,671
배우자(Spouse) 등			
경로자(Age 65)		6,916	496
장애(Disability)	기본	7,766	1,165
	18세 미만 추가	4,530	680
피부양자 장애(18세 이상)		6,589	988
가족요양인(Caregiver)		4,530	680
연금소득(pension income)		2,000	300
자녀(Child)		2,255	338
입양(adoption)		11,774	1,766
자녀 체육활동		500	75
자녀 예술 활동			
캐나다 연금 보험료		2,426	364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914	137
캐나다 근로소득자		1,127	169
교육비	Full-time	400	60
	Part-time	120	18
도서구입	Full-time	60	10
	Part-time	20	3
기부금		순소득의 7%	
의료비		2,171캐나다달러와 순소득의 3% 중 적은 금액	

주: 퀘벡 주는 제외함

자료: CCH(2014), p.viii

나)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

- 근로장려세액공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치후원금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국외근무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등이 있음⁸⁰⁾

80) 근로장려세액공제는 2007년 도입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음. 2013년 기준으로 독신에게 최대 C\$989, 가구에 최대 C\$1,797의 금액을 지원함

다. 소득세 통계

1) 소득세 신고 일반

- 2008년과 2009년 징수된 캐나다 연방 소득세는 1,160억캐나다달러로서 사회보장세 다음으로 연방 정부의 중요한 세수입에 해당됨⁸¹⁾
 - 소득의 상위 1%에 속하는 집단이 연방소득세의 24%, 소득의 상위 10%가 연방소득세의 56%를 납부하고 있어 캐나다 소득세는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국내에서는 평가하고 있음⁸²⁾

〈표 Ⅲ-11〉 캐나다 연방 세수입 구성(2008년, 2009년)

(단위: 10억캐나다달러)

세수입 구분	금액
소득세	116.0
법인세	29.4
소비세	39.8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61.4
기타	30.8

자료: <http://www.parl.gc.ca/Content/LOP/ResearchPublications/2011-43-fig1-e.htm>, Brett Stuckey, Adriane Yong(2011), p.1,

- 캐나다 연방소득세 신고자중 실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66.07%이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약 33.92%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81) 사회보장세에는 캐나다 연금 제도, 퀘벡 주 연금제도 및 고용보험료로 구성됨

82) Brett Stuckey, Adriane Yong(2011), p.4

〈표 Ⅲ-12〉 캐나다 연방 소득세 세액 산출 신고 현황

(단위: 천건,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신고건수 (비율)	총소득 금액 (비율)	신고건수 (비율)	총소득 금액 (비율)	신고건수 (비율)	총소득 금액 (비율)
세액 산출 신고 (taxable return)	17,023 (66.06)	952,611 (91.50)	17,167 (65.97)	979,444 (87.29)	17,429 (66.18)	1,028,428 (91.66)
세액 미산출 신고 (non-taxable return)	8,746 (33.94)	88,523 (8.50)	8,856 (34.03)	90,884 (12.71)	8,905 (33.82)	93,591 (8.34)
합계	25,769 (100)	1,041,134 (100)	26,023 (100)	1,122,018 (100)	26,334 (100)	1,122,019 (100)

주: 납부세액 등이 산출된 경우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세액 등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함

자료: CAR, Final Statistics (T1 data), <http://www.cra-arc.gc.ca/gncy/stts/gb09/pst/fnl/dwnldf-eng.html>

2)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관련 사항

- 캐나다 연방 소득세 신고 현황 중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신고 비율은 근로소득자 신고자가 평균적으로 76.45%이고 사업소득자가 16.49%임
 - 연방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에서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66.19%이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5.07%임
- 연방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업무관련 비용공제와 일반공제로 구분됨
 - 근로소득자 업무관련 비용 공제의 금액은 총비용공제 금액 중에서 약 3.49%를 차지하고 있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공제는 연금제도 관련된 조세지원으로 약 48.03%를 차지함

〈표 Ⅲ-13〉 소득원천별 캐나다 연방 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건,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신고건수 (비율)	금액 (비율)	신고건수 (비율)	금액 (비율)	신고건수 (비율)	금액 (비율)
총급여	19,793 (76.81)	688,536 (66.13)	19,792 (76.06)	708,069 (66.15)	20,140 (76.48)	743,825 (66.29)
사업소득	4,214 (16.35)	53,598 (5.15)	4,300 (16.53)	54,673 (5.11)	4,368 (16.59)	55,512 (4.95)
기타	1,762 (6.84)	299,000 (28.72)	1,931 (7.41)	307,586 (28.74)	1,826 (6.93)	332,682 (28.76)
총소득	25,769 (100)	1,041,134 (100)	26,023 (100)	1,070,328 (100)	26,334 (100)	1,122,019 (100)

주: 기타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회보장금 수령금 등의 합으로 구성됨

자료: CAR, Final Statistics (T1 data), <http://www.cra-arc.gc.ca/gncy/stts/gb09/pst/fnl/dwnldf-eng.html>

〈표 Ⅲ-14〉 캐나다 연방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 현황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2009		2010		2011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근로소득자업무비용	836,320	4,016	831,500	4,145	835,940	4,296
연금제도 관련 조세지원 ¹⁾	13,342,450	59,689	13,425,240	59,891	24,338,503	50,990
적격이사비용	110,080	431	108,900	433	105,380	428
자녀양육비용	1,221,640	3,968	1,240,780	4,190	1,262,030	4,412
장애자지원	1,400	6	1,260	7	1,300	6
총비용공제		112,575		117,038		127,780

주: 1) 연금제도 관련 조세지원은 CPP, QPP, RPP, RRSP 등 연금보험료 공제항목임

자료: CAR, Final Statistics (T1 data), <http://www.cra-arc.gc.ca/gncy/stts/gb09/pst/fnl/dwnldf-eng.html>

□ 인적공제나 특정 항목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하여 비환급성 세액공제가 적용됨

○ 캐나다 근로소득자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의 업무 관련 비용을 보전을 목적으로 함

〈표 Ⅲ-15〉 캐나다 연방 소득세 주요 세액공제 신청 현황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2009		2010		2011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인적세액공제	37,087,680	327,756	37,497,450	333,274	37,942,330	342,003
보험료 세액공제	18,746,510	7,495	18,846,540	7,709	19,143,930	8,321
캐나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17,003,780	17,130	17,037,990	17,291	17,304,960	17,772
교육비 세액공제	2,317,610	10,375	2,378,250	11,075	2,421,020	11,877
의료비세액공제	4,065,660	9,805	4,224,060	9,886	4,339,800	10,529
기부금세액공제	5,752,400	2,276	5,894,670	2,460	5,850,550	2,499

주: 연금제도 관련 조세지원은 CPP, QPP, RPP, RRSP 등 연금보험료 공제항목임

자료: CAR, Final Statistics (T1 data), <http://www.cra-arc.gc.ca/gncy/stts/gb09/pst/fnl/dwnldf-eng.html>

3. 호주

가. 소득세 과세체계

1) 개요

가) 과세소득

- 거주자(Resident)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에는 호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포괄주의 소득과세에 의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세무신고를 수행함⁸³⁾

83) 안종석(2012), p. 69. 각주 12)

나) 과세소득 신고제도

- 호주연방 소득세 세무신고의 과세연도는 직전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이며,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인 10월 31일까지임
- 호주 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최소 19%~최대 45%의 초과누진세율구조임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
 - 2013/2014 과세연도의 소득세 면세 과세표준 구간(tax-free threshold)은 18,200 호주 달러임⁸⁴⁾
-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중간예납(PAYG Instalment payments)이 있음⁸⁵⁾
 - 단, 가장 최근 제출된 소득세 세무신고에 의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4,000호주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함⁸⁶⁾
 - 중간예납은 일반적으로 분기별 납부이며, 납부기한은 11월 28일, 2월 28일, 4월 28일, 그리고 7월 28일임
 - 특정 업종에 한하여 반기별 중간예납이 허용되며, 이 경우 연간 PAYG 납부액의 75%를 4월 28일까지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7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84) CCH(2014), p.27.

해당 과세연도 중 거주자 지위(tax residency)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해당월수에 대한 조정이 있음

- 면세구간 금액 = 13,464\$ + [\$4,736 × 거주자 해당 월수/12]

85) <https://www.ato.gov.au/Print-publications/Introduction-to-PAYG-instalments/>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국외 연금소득, 국외원천소득, 사용료소득, 신탁 및 파트너십 소득 등이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 해당함

86) 그러나 총수입금액이 비록 4,000호주달러 이상이라도 결정 고지된 수정소득금액(adjusted balance of assessment)이 1,000호주달러 이하이거나, 명목세액(notional tax)이 500호주달러 이하, 시니어 또는 연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됨

〈표 Ⅲ-16〉 호주 소득세 세율체계(2013/2014 과세연도)

(단위: %, 호주달러)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누적세액
18,201 ~ 37,000	19	3,572
37,001 ~ 80,000	32.5	17,547
80,001 ~ 180,000	37	54,547
180,001 ~	45	-

자료: CCH(2014), Australian Master Tax Guide, 54th Edition, p.1,834

다) 원천징수제도

- 호주는 근로소득 이외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Pay As You Go Withholding(PAYG W)제도에 의하여 월별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임금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⁸⁷⁾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연방 소득세 세무신고를 통해 조정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기타소득(other income)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됨⁸⁸⁾
 - 배당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임
 - 단, 조세조약에 의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3~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⁸⁹⁾

87) Gutiérrez P., C. et al. (eds), p.98

88) Gutiérrez P., C. et al. (eds), p.102

89) Gutiérrez P., C. et al. (eds), p.35

카지노 정킷(casino junket)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연예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대가나

라) 장부의 기장 및 보관의무

- 납세자는 소득세 세무신고로 보고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음⁹⁰⁾
 - 과세소득 및 납부세액의 산출과 관련된 장부·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⁹¹⁾
 - 일반적으로 비용공제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기장은 5년간 보존의무가 있음⁹²⁾
 - 보고 및 신고의 태만, 허위,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음

2) 세액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 과세대상 수입금액(assessable income)에서 수입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⁹³⁾
 - 과세대상 수입금액에는 임금·급여(salary or wages) 등, 연금수령액, 이자수령액,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음
 -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자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 소득공제를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도급계약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투자신탁이나 금융기관(intermediaries)에 지급되는 이익분배금은 7.5%의 세율이 적용됨

90) section 262A of Income Tax Assessment Act, section 382-5 of Schedule 1 to the TAA

91) 안중석(2013), 『주요국의 조세제도』, p.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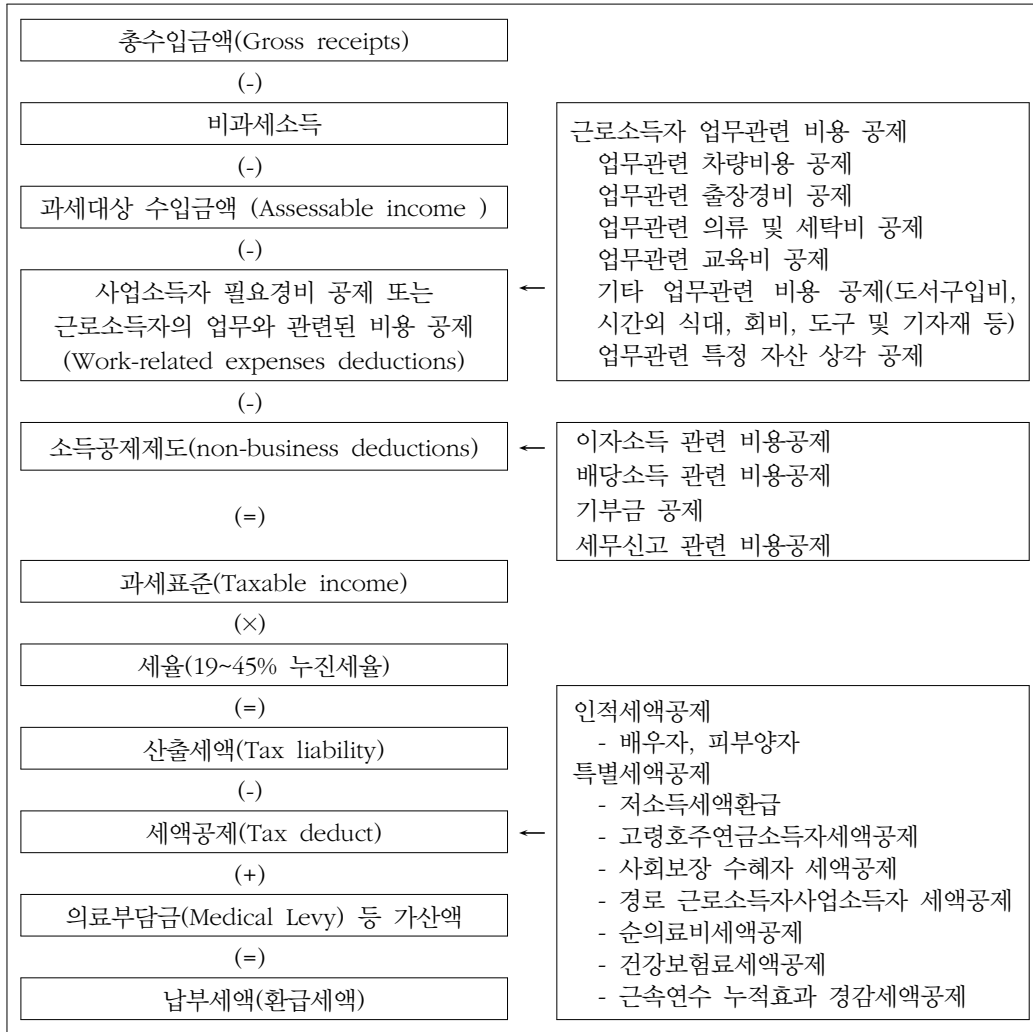
이외에도 GST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납세자는 GST 세무신고 및 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를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GST 사업소득자가 아닌 납세자는 기간별 활동보고서(Instalment Activities Statement, IAS)를 제출하여야 함

92) <http://law.ato.gov.au/atolaw/view.htm?Docid=PSR/PS200411/NAT/ATO/00001>
ATO Practices Statement Law Administration PS LA2005/2

93) ATO(2014a).

이외에도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수당(allowance), 이사보수, 고용주 지급일시금, 퇴직일시금(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정부지원 수당(Australian Government allowances and payments), 공적연금수령액(Australian Government pensions and allowances)과 연금소득, 인적용역소득, 이자, 배당,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 파트너십 및 신탁이익, 사업소득, 자본소득, 국외소득, 임대소득, 보험수령액, 산림관련 소득, 기타소득이 있음

[그림 Ⅲ-3] 호주 연방 소득세 과세체계



자료: CCH(2014), p. 26

산출세액에서 단일세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함⁹⁴⁾

94)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함. 가족세제지원금(Family Tax Benefit), 자녀장려세액공제(Child Care Rebate), 근로보조세액공제(Working credit)가 있음

나. 소득세 공제제도

1) 필요경비 공제(deductions)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창출활동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는 업무관련을 고려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업무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아 총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보전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함
 - 그러나 가사 비용(private and domestic expenses)이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의 성격을 갖고 있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거(resident)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대비용(rent), 이자비용, 재산세(rate and tax) 등은 가사비용으로 보아 업무관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업무 관련 비용의 합계가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장부(record keeping for work-related expenses)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⁹⁵⁾
- 종업원 업무관련 비용공제에는 ① 업무 관련 차량비용 공제(work-related car expenses), ② 업무 관련 출장경비 공제(work-related travel expenses), ③ 업무 관련 의류 및 세탁비 공제(work-related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expenses), ④ 업무 관련 교육비 공제(work-related self-education expenses), ⑤ 기타 업무관련 비용 공제(other work-related expenses), ⑥ 업무관련 특정 자산 상각 공제(low-value pool deduction)가 있음
 - 업무관련 차량운반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⁹⁶⁾
 - 공제대상 비용의 계산목적으로 실제 발생 비용의 3분의 1(one-third of actual

95) ATO(2013a), p. 25

96) ATO(2013a), p. 26

expenses), 운행일지 방법(logbook), 업무관련 운행기록(business kilometres) 당 일정금액, 가액의 12% 방법(12% of original value)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 택시요금 등 대중교통비용, 통행료, 주차료, 식대, 숙박비 등 출장과 관련된 비용, 기타 차량 관련 비용, 주유대,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 업무와 관련하여 유니폼, 작업복(occupation-specific clothing), 보호장비(protective clothing)등 구입비용과 세탁비, 수선유지비는 필요경비로서 비용 공제할 수 있음⁹⁷⁾
 - 세탁비가 150호주달러를 초과하고 의류 및 세탁비 공제 합계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세탁 및 수선유지를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⁹⁸⁾
- 종업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음
 - 교육과정으로 인한 특정 기술이나 특정 지식의 습득, 또는 교육과정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추정될 수 있어야 함
 - 단, 일반적 교육과정 또는 이직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은 적용 배제됨
- 기타 업무관련 비용공제는 업무관련 도서, 시간외근무 식대, 조합회비, 안전모이나 안경 등 보호장구, 전문적인 세미나, 강좌, 회의, 워크숍 참석 비용, 컴퓨터, 전화, 개인용 가구 등의 업무사용분, 업무 수행시 사용되는 300호주달러 이하의 도구(tool)나 기자재(equipment) 등이 있음⁹⁹⁾

97) ATO(2013a), p.28

98) 예를 들면 작업복을 직접 세탁하여 수선한 경우 한 벌당 1호주달러를 공제할 수 있음

99) 시간외 식대의 경우 건강 27.1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함. 단, 고용계약서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고용주가 시간외근무 관련 식대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포함한 경우에 한함

2) 소득공제

-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 관련 비용, 기부금, 세무신고 관련 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함
- 금융소득 관련 비용공제
 - 신고대상 이자나 배당수령액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으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 또는 금융사의 계좌수수료, 투자 관련 투자자문 수수료, 소득획득 투자목적 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음
- 기부금공제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목적의 특정 비영리단체에 대한 2달러 이상의 증여 또는 기부하는 경우 공제가 허용됨
- 세무신고 관련 비용공제
 - 소득세 세무신고, 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ies statements) 신고서 등 제출 등 공인된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허용됨
 - 이외에 세무대리인 출장비, 세무관련 자료구입비, 과세관청 대응비용, 세무관련 소송비용, 과태료(interest charge we imposed on you) 등이 이에 해당됨

3) 세액공제(tax offsets)¹⁰⁰⁾

가) 기본인적세액공제(basic personal tax credit)

- 납세자 본인의 조정과세소득(ATI) 150,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세액공제, 피부양자 세액공제, 특정지역 거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00) 호주 세액공제의 의미로 offset, rebate, credit을 혼용하여 사용함

- 배우자 세액공제(Spouse without dependent child or student)
 - 1952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배우자의 조정과세소득(ATI)이 10,166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대 2,471호주달러를 한도로 함

- 피부양자 세액공제(Invalid and carer dependent)
 - 1952년 이후 출생한 배우자, 16세 이상의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최대 2,471호주달러를 한도로 함
 - 단, 배우자 세액공제(Spouse without dependent child or student)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특정지역 거주(Zone or overseas forces) 세액공제
 -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국외에서 군 업무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음

나) 특별항목 세액공제(itemized tax credit)

- 2013/2014년 과세연도에 납세자가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표 III-19>와 같으며 근속연수 누적효과 경감세액공제 외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됨

- 저소득 세액환급제도(Low income rebate)
 - 최대 환급세액은 445호주달러(2013/2014 과세연도)임
 - 과세표준 37,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 1달러당 1.5센트씩 감액되어 과세표준이 66,667호주달러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됨¹⁰¹⁾
 - 저소득 고령 납세자 세액공제(the low income aged person offsets)의 경우 추

101) CCH(2014), p. 846

가 환급이 가능함

- 고령 호주 연금소득자 (seniors australian and pensioners) 세액공제는 저소득 고령 연금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임
- 사회보장 수혜자 세액공제(beneficiary offset)는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호주 사회보장금 수령액,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금, 농가세대주 지원금 등이 포함된 경우 적용됨
 - 수령액이 6,000호주달러를 초과하고 37,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을 세액공제하고,
 - 수령액이 37,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함
- 경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세액공제(mature age worker tax offset)는 근로소득, 인적용역소득, 파트너십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등이 인적용역 관련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55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 단, 1957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납세자에 한함
 - 과세대상 소득금액 10,000호주달러까지는 5%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은 500호주달러를 한도로 함
 - 53,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비율로 세액공제액을 감액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63,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음
- 순의료비 세액공제(Net medical expense rebate)는 피부양자를 위하여 지출한 순의료비용에 대하여 10% 또는 20%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허용함

〈표 Ⅲ-17〉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구분	조정과세소득(ATT)	세액공제 한도
단독	84,000호주달러 이하	2,12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순의료비용의 20%
	84,000호주달러 초과	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순의료비용의 10%
세대주	168,000호주달러 이하	2,12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순의료비용의 20%
	168,000호주달러 초과	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순의료비용의 10%

자료: ATO(2013). Individual tax return instructions supplement 2013, p.31, Table 1

- 건강보험료 세액공제(Private Health Insurance offset)는 병원진료,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health insurance policy)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납부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¹⁰²⁾

〈표 Ⅲ-18〉 세액공제 요약(Personal tax offsets and rebates)

구분	세액공제 한도(2013/2014 과세연도)
배우자	최대 2,471호주달러 2012/2013 과세연도부터 1952년 7월 1일 이전 출생에 한하여 적용됨
피부양자	최대 2,471호주달러
저소득자	445호주달러(37,000호주달러 초과 과세표준은 1호주달러당 1.5센트씩 감액)
시니어호주연금, 사회보장 수혜자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한도 조정됨
경로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500호주달러(53,000~63,000호주달러 구간에서는 감액됨) 2012년 7월 1일자 이후 1957년 7월 1일 이후 출생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됨
순의료비	조정과세소득이 84,000호주달러(세대주 168,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의료비-2,120호주달러)× 20% 조정과세소득 84,000호주달러(세대주 168,000호주달러)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5,000호주달러)× 10%
건강보험료	보험정책과 소득에 따라 한도 조정됨
특정 지역거주(Zone) 일반 지역 A	338호주달러 + 배우자· 피부양자 등 세액공제액의 50%
일반 지역 B 특수 지역 A, B	57호주달러 + 배우자· 피부양자 등 세액공제액의 20% 1,173호주달러 + 배우자· 피부양자 등 세액공제액의 50%
근속연수 누적효과 경감	수령하는 일시금에 따라 조정됨

자료: CCH(2014), p.1,874 표 "Personal tax offsets and rebate"를 재조정함

102) CCH(2014), p. 856

- 근속연수 누적효과 경감세액공제(Income Arrears Rebate)는 지급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발생주의에 의해 미리 설정된 소득을 일시에 지급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누적 효과의 경감을 목적으로 함

다. 소득세 통계

1) 소득세 신고 일반

- 개인, 법인, 펀드 등 세무신고 현황에서 2011/12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세무신고가 12,736천건으로 전체 세무신고 중에서 84.4%를 차지함

〈표 Ⅲ-19〉 호주 납세의무자별 세무 신고현황

(단위: 천건, %)

구분	2009/10		2010/11		2011/12	
	신고수	비율	신고수	비율	신고수	비율
개인	12,380	84.7	12,638	84.7	12,736	84.4
법인	779	5.3	789	5.3	818	5.4
펀드1	377	2.6	395	2.6	428	4.0
파트너십	382	2.6	370	2.5	360	2.4
신탁	702	4.8	730	4.9	753	3.8
합계	14,620	100	14,922	100	15,095	100

주: Self-managed super fund와 APRA fund 등이 포함됨

자료: ATO, Taxation statistics 2010-11, p.2, Table 1.1.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1-12/?anchor=income#income>

- 2011/12 과세연도 소득세 세무신고를 수행한 납세자는 12,736천건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건은 9,800천건으로 약 76.95%를 차지함

〈표 Ⅲ-20〉 호주 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건, %)

구 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과세표준 신고 (비율)	10,083 (77.60)	9,582 (74.23)	9,537 (74.09)	9,743 (74.28)	9,800 (76.95)
과세표준 미달 (비율)	2,911 (22.40)	3,326 (25.77)	3,512 (26.91)	3,373 (25.72)	2,936 (23.05)
합계 (비율)	12,994 (100)	12,908 (100)	13,049 (100)	13,116 (100)	12,736 (100)

자료: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1-12/?page=23#Individual_tax

- 호주 연방소득세 신고자중 실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75.23%이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약 24.77%는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호주 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외부 신고가 2011/12 과세연도 현재 약 72%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21〉 호주 소득세 신고방법별 현황

(단위: 천건)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전자신고	2,476	2,598	2,598
세무대리인 외부신고	9,452	9,518	9,226
자기신고	1,121	1,000	912
합계	13,049	13,116	12,736

자료: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1-12/?page=23#Individual_tax

2)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관련 사항

- 호주 소득세 신고 현황 중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신고 비율은 근로소득자 신

고자가 약 80%이고 사업소득자가 약 23%임

○ 신고금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약 76%를, 사업소득자가 약 3%를 차지함

〈표 Ⅲ-22〉 소득원천별 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09/10		2010/11		2011/12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임금·급여	9,680,305	460,699	9,932,610	499,336	10,144,475	535,574
파트너십·신탁분배 소득	1,964,615	38,591	1,938,920	43,611	1,825,245	46,458
사업소득	995,705	22,559	1,013,075	25,012	1,026,020	25,998
배당수익	3,021,780	17,805	3,009,195	19,973	2,955,010	19,899
이자수익	6,190,725	11,167	6,784,815	15,269	7,147,550	16,973
자본소득	541,900	10,979	557,015	11,619	424,320	9,188
세액가산액	3,013,070	7,623	2,991,930	8,553	2,943,085	8,521
수당·현물급여·팁	2,145,875	7,266	2,243,510	7,696	2,293,225	8,263
공적연금소득	711,445	5,979	698,750	6,294	693,705	6,458
기타소득	-	27,703	-	32,530	-	34,476
임대소득	1,751,680	-4,810	1,811,175	-7,862	1,895,775	-7,860
소득 합계	12,228,280	605,561	12,488,215	662,032	12,688,520	703,947

자료: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statistics/Taxation-statistics-2011-12/?anchor=Table9#Table9>

□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업무비용 공제와 일반 공제로 구분됨

○ 근로소득자업무비용 공제의 금액은 총비용공제 금액 중에서 약 59%이며, 신청 건수도 약 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Ⅲ-23〉 소득세 주요 비용공제 신청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09/10		2010/11		2011/12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근로소득자업무관련비용	8,118,630	17,132	8,333,960	18,270	8,549,065	19,358
연금보험료	181,265	3,840	188,615	4,233	185,860	4,400
세무신고 관련 비용	5,671,850	2,017	5,930,500	2,125	6,128,240	2,276
기부금	4,400,785	1,964	4,793,775	2,212	4,536,370	2,242
기타 비용공제	591,695	1,700	646,295	1,560	678,725	1,458
배당금 관련 비용	289,545	1,432	301,600	1,577	285,095	1,395
이자수익 관련 비용	515,295	1,405	481,785	1,299	437,125	1,144
합계	9,944,570	29,490	10,260,105	31,276	10,449,620	32,272

자료: <https://www.ato.gov.au/>

4. 일본

가. 소득세 과세체계

1) 개요

가) 과세소득

- 거주자는 각 소득원천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 소득원천별로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함

나) 과세소득 신고제도

- 소득세 세무신고의 과세기간은 역년이며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임

- 일본 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최소 5%~최대 40%의 초과누진세율구조임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
 - 기준소득세액에 대하여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부가됨¹⁰³⁾
 - 소득세 기준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

〈표 Ⅲ-24〉 일본 소득세 세율체계(2014 과세연도)

(단위: 엔(¥), %)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공제액
~1,950,000 이하	5	0
1,950,000 초과 ~ 3,300,000 이하	10	97,500
3,300,000 초과 ~ 6,950,000 이하	20	427,500
6,950,000 초과 ~ 9,000,000 이하	23	636,000
9,000,000 초과 ~ 18,000,000 이하	33	1,536,000
18,000,000 초과 ~	40	2,796,000

자료: 일본 재무성, トップページ) 税制) わが国の税制の概要) 所得税など(個人所得課税)) 個人所得課税の税率構造

-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이 15만엔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반기별 소득세 중간예납의 무가 있으며 반기별 중간예납기한은 각각 7월 31일, 11월 30일임¹⁰⁴⁾¹⁰⁵⁾

다) 원천징수제도

- 일본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보수요금 등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보수요금 등에 대해서는 최고 20.42%의 세율이 적용됨¹⁰⁶⁾

103)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13년 1월1일부터 2037년까지 한정기간동안 소득세에 부가하여 부흥특별소득세가 과세됨

104)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tml/06_1.htm

105) Ernst&Young(2013), p.636

106) <http://www.nta.go.jp/index.htm>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소득별로 최고 20.42%의 세율이 적용됨¹⁰⁷⁾
 - 단, 조세조약의 적용에 의하여 세율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라)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

-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관련 법정장부인 경우에는 7년, 그 외 결산 관련 장부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¹⁰⁸⁾

(1) 청색신고제도

- 1947년에 신고납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고납세제도의 보급과 장부기장의 실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함¹⁰⁹⁾
- 청색신고제도는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산림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 청색신고자에게 일반적인 납세자보다 더 엄격한 장부의 기장 및 보관의무가 부여됨¹¹⁰⁾
 - 장부, 결산서류, 현금 및 예금 관련 자료는 7년, 그 외 관련 서류는 5년의 보관의무가 있음
 - 추계에 의한 과세가 인정하지 않음¹¹¹⁾

107) <http://www.nta.go.jp/index.htm>

108)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tml/01_2.htm, 결산 관련 장부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법정 장부 이외의 장부 (임의 장부), 결산 및 재고 관련 서류, 업무 관련 서류 및 청구서,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의미함

109) 도쿄세리사회(2013), p.4

110) 청색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백색신고라 함

- 반면 ① 청색신고특별공제, ② 청색사업 전종자(專從者)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③ 결손금 소급공제와 같은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제공됨¹¹²⁾

- 청색신고특별공제
 -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복식부기 등 법정 기장방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신고 신고기한 내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공제금액은 최고 65만엔이며, 간이장부(簡易帳簿)를 통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은 최고 10만엔임

- 청색사업전종자(專從者) 급여의 필요경비 확대
 - 청색신고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15세 이상 기타 친족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불된 인건비는 청색신고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¹¹³⁾
 - 백색신고자의 경우에는 사업전종자공제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86만엔(단, 15세 이상 친족의 경우에는 50만엔 한도)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결손금 소급공제
 - 청색신고자의 경우 사업 관련 결손금을 전년도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사업소득을 청색신고자인 경우와 백색신고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세부담 수준을 비교시 청색신고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111) 일본 「소득세법」 제156조

112)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tml/01_2.htm

113) 國稅廳(2014), p.2

〈표 Ⅲ-25〉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에 따른 사업소득세 비교

사실관계

- 사업상 이익은 600만엔이고, 배우자 및 기타친족 관련 인건비 지출액은 120만엔임
 - 인적 및 기타 소득공제액은 143만엔임
- 사업상 이익이란 수입금액에서 배우자 등 관련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단위: 엔)

구분	백색신고자	청색신고자	
		복식기장	간이장부
사업상 이익 - ㉠	6,000,000	6,000,000	6,000,000
청색신고특별공제 - ㉡	-	650,000	100,000
청색사업전종자 또는 사업전종자 급여*1- ㉢	860,000	1,200,000	1,200,000
사업소득 - ㉣=(㉠-㉡-㉢)	5,140,000	4,150,000	4,700,000
소득공제 - ㉤	1,430,000	1,430,000	1,430,000
과세표준 - ㉥=(㉣-㉤)	3,710,000	2,720,000	3,270,000
소득세 산출세액 - ㉦× 소득세율	314,500	174,500	22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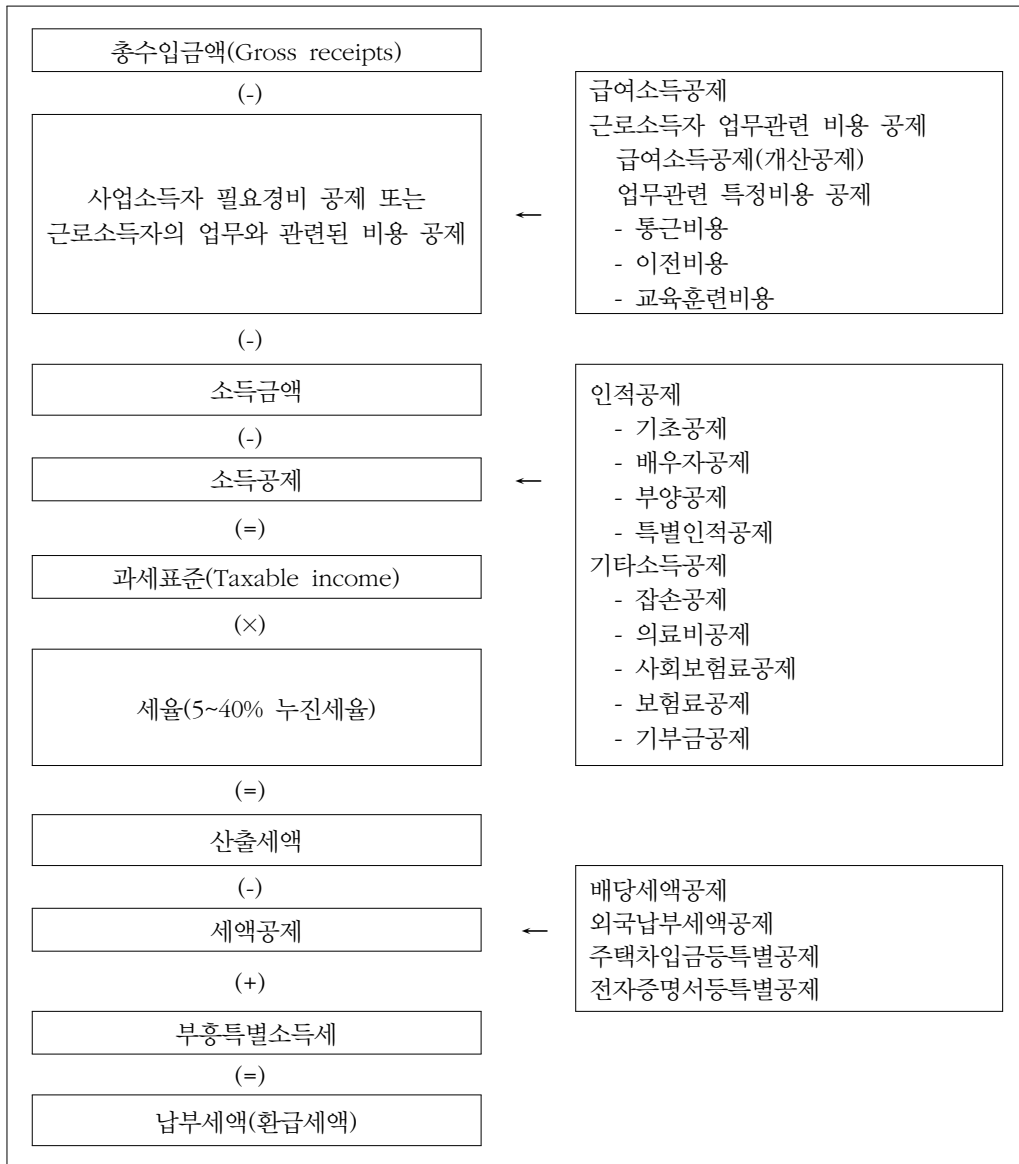
주: 1. 백색신고자의 경우에는 사업전종자공제로 배우자(86만엔 한도)와 15세 이상 친족(50만엔 한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자료: 國稅廳(2014), p.5

2) 세액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 총수입에서 수익획득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 소득공제나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그림 Ⅲ-4] 일본 소득세 과세체계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tml/01_1.htm

나. 소득세 공제제도

1) 필요경비 공제(deduction)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창출활동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는 업무관련을 고려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하여 제한적인 공제를 허용함
 - 청색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청색신고특별공제는 필요경비 공제단계에서 적용되어 사업소득을 계산함
- 근로소득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급여수입의 금액에 따라서 5~40%의 공제율로 개산 공제하며 이를 급여소득공제라고 함

〈표 Ⅲ-26〉 일본 급여소득공제(2014 과세연도)

(단위: 엔(¥), %)

급여수입금액	공제율	누적공제액 ¹⁾
650,000 초과 ~ 1,800,000 이하	40	650,000
1,800,000 초과 ~ 3,600,000 이하	30	720,000
3,600,000 초과 ~ 6,600,000 이하	20	1,260,000
6,600,000 초과 ~ 10,000,000 이하	10	1,860,000
10,000,000 초과 ~ 15,000,000 이하	5	2,200,000
15,000,000 초과 ~	-	2,450,000

주: 1) 65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65만엔 공제하고, 상한액은 245만엔

자료: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tax_policy/summary/income/049.htm

- 과세기간동안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업무 관련 특정 비용의 합계금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급여수입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¹¹⁴⁾
 - 업무 관련 특정 비용이란 통근비용, 직장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전문기술 관련 교육 훈련비용, 법률가, 회계사, 세무사, 연예인 자격취득 관련 비용, 업무수행 관련 의복

114) http://www.mof.go.jp/tax/tax_policy/summary/income/056.htm

이나 도서지출비용(단, 그 합계액이 65만엔을 한도로 함)이 있음¹¹⁵⁾

- 업무 관련 특정 비용의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의 구비와 고용주의 확인이 필요함

2) 소득공제

- 부양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인적공제와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기타 소득공제가 있음
- 인적소득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공제로 구분하여 연령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 및 공제금액이 달리 정하고 있음
 - 장애인, 노인, 한부모 세대, 근로소득자이면서 학생인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표 Ⅲ-27〉 인적소득공제제도 요약

구분		대상자	소득공제액
기초 인적 공제	기초공제	본인	38만엔
	배우자 공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이 38만엔 이하인 배우자를 가진 자	배우자가 70세 미만인 경우, 38만엔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48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본인 소득이 연간 1,000만엔 이하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8만엔 초과 76만엔 이하인 경우	최고 38만엔
	부양공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이 38만엔 이하인 친족이 있는 자	부양친족이 16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23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38만엔 부양친족이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경우, 63만엔 부양친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48만엔 직계존속인 노친(老親)과 동거하는 경우, 58만엔

115) Ernst&Young(2013), p. 631

〈표 Ⅲ-27〉의 계속

구분	대상자	소득공제액
특별 인적 공제	장애자 공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친족 등이 장애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27만엔 특별 장애자인 경우 40만엔 동거하는 특별 장애자인 경우 75만엔
	한부모 (寡婦, 寡婦) 공제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자로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500만엔 이하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자의 경우 27만엔 남편과 사별한 자로 부양친족인 아이가 있 는 경우, 35만엔
	근로학생공 제	본인이 「학교교육법」상의 학생인 경우 연간 소득이 65만엔 이하이고, 급 여소득 이외 10만엔 이하 27만엔

자료: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5htm

-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과세연도 중 발생한 잡손실,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허용함

〈표 Ⅲ-28〉 기타(항목별) 소득공제제도 요약

구분	개요	소득공제 한도
잡손공제	재해, 도난, 횡령에 의한 손실	다음 중 큰 금액 ① (재해손실액+재해관련지출액) - (연간소득금액×10%) ② 재해 관련 지출액 - 5만엔
의료비공제	본인,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친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보험금수령액-(10만엔 또는 연간 소득금액×5%중 적은금액) 단, 200만엔 한도
보험료공제	사회보험료 납부액 생명보험, 의료보험, 개인연금보험, 손해보험 납부액 지진보험료 납부액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경우, 납부액 전액 2012년 1월 1일 이후 체결 보험계약은 최고 4만 엔을 한도로 한 일정액 2011년 12월 31일 이전 체결 보험계약은 최고 5 만엔을 한도로 한 일정액 지진보험계약의 경우 5만엔 한도로 하여 납부액 전액
기부금공제	특정 기부금 지출액	특정기부금의 합계액 또는 연간소득금액×40% 중 적은금액에서 2천엔 차감한 후 금액

자료: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8.htm

3) 세액공제(tax credit)

-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과 배당세액공제, 그리고 조세특례적인 세액 공제들이 있음
 - 조세특례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는 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 전자증명서등특별공제, 정당등기부금특별공제 등이 있음

다. 소득세 통계

1) 소득세 신고 일반

- 2012년도 일본 국세 세수에서 소득세는 13조 9,904억엔(원천소득세 11조 4,725억엔, 신고소득세 2조 5,200억엔)으로 31.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Ⅲ-29〉 일본 국세(國稅) 수입 구성

(단위: 백만엔, %)

구분		2010	2011	2012
소득세	원천소득세	10,677,036 (25.73)	11,010,764 (25.71)	11,472,513 (26.11)
	신고소득세	2,307,316 (5.56)	2,465,427 (5.76)	2,519,974 (5.74)
	소계	12,984,351 (31.30)	13,476,192 (31.46)	13,990,487 (31.85)
법인세		8,967,688 (21.62)	9,351,426 (21.83)	9,758,311 (22.21)
소비세		10,033,311 (24.18)	10,194,597 (23.80)	10,350,429 (23.56)
기타		9,501,444 (22.90)	9,810,387 (22.90)	9,832,180 (22.38)
합계		41,486,794 (100)	42,832,602 (100)	43,931,407 (100)

주: 일본 소득세는 원천징수여부나 확정신고 여부에 따라 원천소득세와 신고소득세로 구분하여 소득세 관련 세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reference/account/h2012.htm, 연도별 租稅及 び印紙收入決算額調 재구성함

2)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관련 사항¹¹⁶⁾

-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를 통하여 소득세가 부과·납부되는데 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세무신고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됨

〈표 Ⅲ-30〉 소득세 납세자 및 소득금액 현황(표본조사)

(단위: 천명, 억엔)

구분		2010	2011	2012
사업 소득	납세자수	1,429	1,541	1,595
	소득금액	59,346	59,474	62,361
부동산소득	납세자수	1,062	1,057	1,071
	소득금액	55,041	54,103	54,661
급여 소득	납세자수	2,290	2,304	2,316
	소득금액	154,732	154,995	156,822
잡소득	납세자수	2,014	940	860
	소득금액	40,132	22,811	20,939
기타	납세자수	225	229	250
	소득금액	40,706	45,407	52,161
합계	납세자수	7,021	6,071	6,093
	소득금액	346,958	336,790	346,945

주: 소득세 납부세액 발생 신고자만 반영됨
 자료: 일본 국세청, 소득세 신고 표본 조사

- 2012년 과세연도 현재 근로소득자 대비 사업소득자(부동산 소득제외)의 상대적 비율은 약 97 : 3 으로 근로소득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수준임
- 사업소득 신고건수는 〈표 Ⅲ-31〉상 2012년 수치, 근로소득 신고건수는 〈표 Ⅲ

116) 이하 본문의 현황은 일본 국세청에 의해 실시되는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를 통한 소득세 신고현황을 살펴봄

소득세 신고 표본조사는 일본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소득세 신고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표본조사 결과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 납세자에 대한 소득구분별, 소득계층별 분포 및 각종 소득공제 등 적용 실태를 밝히고 세수예산, 세제 개정 및 세무행정운영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조사대상은 매년 소득세 세무신고 기한 내 세무신고한 납세자중 납부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shinkokuhyohon/top.htm>)

-32) 의 2012년도 건수를 인용하여 계산함

〈표 Ⅲ-31〉 급여소득자 및 총급여액(표본조사)

(단위: 천명, 억엔)

구분	2010	2011	2012
급여소득자	45,520	45,657	45,556
총급여액	1,875,455	1,867,459	1,858,508

자료: 일본 국세청, 「소득세 신고 표본 조사」

□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인적공제와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기타 소득공제가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표 Ⅲ-32〉 연도별 소득공제 현황(표본조사)

(단위: 천명, 억엔)

구분	2010		2011		2012		
	공제 적용자 수	공제액	공제 적용자 수	공제액	공제 적용자 수	공제액	
인적공제	기초공제	7,021	26,680	6,071	23,071	6,093	3,152
	부양공제	1,347	10,351	935	6,033	981	6,377
	배우자특별공제	183	470	158	398	162	406
	배우자공제	2,330	9,562	1,846	7,367	1,810	7,224
	장애자공제	776	2,528	693	2,499	694	2,505
기타소득공제	잡손공제	5	25	32	213	11	61
	의료비공제	2,026	3,874	1,737	3,550	1,740	3,534
	사회보험료공제	6,637	29,852	5,711	8,416	5,733	29,473
	소규모기업공제등 부금공제	447	2,189	457	2,251	468	2,313
	생명보험료공제	5,402	2,566	4,607	2,190	6,641	2,810
	지진보험료공제	2,250	514	2,027	478	2,071	485
	기부금공제	226	272	427	510	179	283
합계	28,651	88,883	24,701	76,976	26,583	78,623	

자료: 일본 국세청, 「소득세 신고 표본 조사」

- 이중과세 경감 및 조세특례로 적용하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구분 없이 조건이 충족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 가능함

〈표 Ⅲ-33〉 연도별 세액공제 현황(표본조사)

(단위: 천명, 억엔)

구분	2010		2011		2012	
	납세자	공제액	납세자	공제액	납세자	공제액
배당세액공제	191	212	181	216	185	240
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	244	367	273	407	276	406
전자증명서등특별공제	51	3	39	2	30	1
기타	23	79	94	98	105	106
합계	491	660	558	722	565	753

자료: 일본 국세청, 「소득세 신고 표본 조사」

- 청색신고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급여소득 등에서 청색신고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Ⅲ-34〉 연도별 청색신고자 현황(표본조사)

(단위: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청색신고	그 외	청색신고	그 외	청색신고	그 외
사업소득	816	613	875	666	910	685
부동산소득	654	408	657	401	674	397
급여소득	462	1,829	465	1,839	473	1,843
잡소득	135	1,876	127	813	129	732
기타	51	174	54	174	60	189
합계	2,118	4,903	2,177	3,894	2,247	3,846

주: 소득세 납부세액 발생 신고자만 반영됨
 자료: 일본 국세청, 「연도별 소득세 신고 표본 조사」 자료를 재구성함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소득세 과세체계

1) 소득세 과세대상

-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일본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투자소득 등으로 소득 원천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함
 -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소득 원천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과세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공제와 특별공제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
 -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
 - 캐나다는 사업(business), 자산(property) 직무(office), 고용관계(employment)의 각 원천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필요경비 공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적용에 차이가 거의 없음
 - 호주는 임금·급여(Salary or wages), 연금소득,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필요경비 공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적용에 차이가 거의 없음
 - 일본은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등 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

자 간 소득공제의 적용에 거의 차이가 없음

2) 소득세율 체계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최저 6%~최고 38%의 5단계 누진세율구조임
 - 미국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39.6%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구조이며, 신고유형에 따라 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구간을 달리하고 있음¹¹⁷⁾
 - 캐나다 연방 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최소 15%~최대 29%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이고, 호주의 경우에는 최저 19%~최대 45%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이고, 일본의 경우는 최저 5%~최대 40%의 6단계 초과세율구조임
 - 호주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과세표준 구간(tax-free threshold)이 있으며 2013/14 과세연도 면세구간은 18,200호주달러임

〈표 IV-1〉 국가별 소득세 최저 및 최고세율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우리나라		미국(단독신고)		캐나다		호주		일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최저세율	6	~12,000	10	~9,300	15	~41,700	19	17,460~35,500	5	17,460~35,500
최고세율	38	150,000~	39.6	414,000~	29	129,340~	45	172,650~	40	172,650~

주: 1. 호주의 경우 과세표준 18,200호주달러 이하는 면세구간에 해당함
 2. 각 국가별 과세표준은 원화로 환산함
 3. 소득세는 국세 또는 연방소득세에 한함

117) 신고유형에는 단독, 부부합산, 세대주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나. 소득세 통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비율

- 국세통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율 국가별로 소득 신고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움
 -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상 국세통계만으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신고에 관련된 정보로 미비할 수 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모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별 소득세 신고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소득세 신고사항을 살펴봄
 - 일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도 중 원천징수를 통하여 대부분 신고되는 반면,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됨

1) 국가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신고자 현황 비교

-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신고자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의 약 23.94%로 근로소득자에 의한 신고비중이 높음

〈표 IV-2〉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신고자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근로소득자	신고인원	15,177	15,540	15,768
	(비율)	(81.13)	(80.76)	(80.16)
사업소득자	신고인원	3,530	3,703	3,903
	(비율)	(18.87)	(19.24)	(19.84)

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확정신고상의 근로소득금액 증감분은 미반영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한 사업소득자 수를 이용함

- 이에 반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비중은 근로소득자에 대하

여 각각 19%, 21%, 10%, 6%를 차지하고 있음

〈표 IV-3〉 국가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9	116,669	22,111	19,793	4,214	9,680	996	-	-
2010	117,820	22,505	19,792	4,300	9,933	1,013	45,520	1,429
2011	119,560	22,917	20,140	4,368	10,144	1,026	45,657	1,541
2012	-	-	-	-	-	-	45,555	1,595

2) 국가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신고금액 비율 비교

-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신고의 소득금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의 약 23%정도임

〈표 IV-4〉 우리나라 소득원천별 금액 및 비율

(단위: 10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근로소득	221,227	239,866	266,609	294,568	319,699
사업소득	51,842	56,007	61,263	69,214	72,507
근로소득 대비 사업소득	23.43	23.35	22.98	23.50	22.68

주: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확정신고상의 근로소득금액 증감분은 미반영됨

2.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 국가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5〉와 같으며, 근로소득 대비 사업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미국 4.52%, 캐나다 7.60%, 호주 4.92%, 일본 2.20% 정도임

〈표 IV-5〉 국가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소득금액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9	74.83	3.2	66.13	5.1	76.08	3.73	-	-
2010	72.16	3.3	66.15	5.1	75.42	3.78	91	2
2011	72.30	3.4	66.29	4.9	76.08	3.69	91	2
2012	-	-	-	-	-	-	91	2

다. 소득세 공제제도

1) 필요경비 공제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급여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실제로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상 별도의 부인규정이 없는 한 대부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관련 거래에 대한 장부기장의무가 있으며 일정기간 증빙서류 및 장부의 유지·보관의무가 있음
- 근로소득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은 사업소득자와 같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정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필요경비와 관련된 기록 및 증빙서류 보관의무가 있음
 - 단, 우리나라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개산공제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를 갈음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업무관련 비용에 반영된 경우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GST/HST 매입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

- 일본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게 급여소득공제라는 개산공제와 함께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표 IV-6〉 국가별 근로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규정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비용 공제	개산공제	근로소득공제 (한도없음)	-	-	-	급여소득공제 (최저 65만엔, 최고 245만엔)
	근로 소득자 업무 관련비용	-	통근비용 차량유지비 출장비용 자가사업장 비용 이사비용	세무자문 자가사업장 비용 차량유지비 커미션비용 출장비용 적격 도구비용 업무관련 GST/HST 매입세액공제	차량유지비 출장비용 업무관련 교육비 업무관련 의료비·세탁비	통근비용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조건	총급여액 수준별로 적용되며 한도액 없음	근로소득자부담비 용에 한함	고용계약에 의하여 업무 관련 비용을 근로소득자가 부담함 업무 관련비용공제 신청시 고용주 확인 요구됨	근로소득자 부담비용에 한함 가사비용· 자본적 지출 제외됨 장부기장 및 보관 의무가 있음	급여소득공제의 경우는 급여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한도가 있음 업무관련비용공제 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직접부담하고 고용주의 확인 필요함	

2) 인적공제

- 본인 및 배우자(또는 동거인), 피부양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소득공제의 방법에 의해, 호주, 캐나다는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본인, 배우자, 장애인, 70세 경로자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당 150만원
을 공제함
- 미국은 본인, 배우자, 19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며, 2014년 기준 현재 인당
3,950달러가 적용되나 일정 조정총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감소됨
- 캐나다는 본인, 배우자,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2014년 현재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인, 배우자, 경로자의 경우 인당
1,671캐나다달러임
- 호주는 배우자, 피부양자 등에 대하여 인적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14년 현재 최대
세액공제한도액은 배우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인당 2,471호주달러임
- 일본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14년 현재 소득공제액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인당 38만엔(일정조건
충족 시 공제액이 가산 조정됨)임

3) 인적외 공제

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반 항목

- 소득별 원천과 대응하여 발생되지 않는 지출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는 사업소득자와 근
로소득자 간 적용의 차이가 거의 없음
 - 소득공제 또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로 하여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부담세액을
경감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가정살림 및 부양가족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적용됨
- 우리나라는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소득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신고

자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 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됨
 - 단, 기부금이나 업무관련 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

□ 월세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저장 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함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공제가 허용됨

□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음

- 근로소득자는 12만원, 사업소득자는 7만원의 세액공제가 됨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12만원이 적용됨

나) 근로소득자세액공제

□ 우리나라, 캐나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근로소득자세액공제 항목이 별도로 두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는 50~66만원임

□ 캐나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는 규정이외의 업무관련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세액공제로 한도는 169.05캐나다달러임

- 최대 근로소득 한도 1,127캐나다달러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함

라. 성실사업소득자제도

-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성실사업소득자라고 하여 표준세액공제액을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월세소득공제를 허용함
 - 성실사업소득자제도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장려, 사업용 계좌제도의 활성화, 신용카드 등 가맹점 증가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에 그 도입취지가 있음

- 일본은 장부기장과 자발적인 신고납세를 유인하기 위하여 청색신고제도를 두고 있음
 - 엄격한 장부기장 요건 적용 및 장부보관의무 강화 등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실사업소득자제도와 유사함
 - 단, 청색신고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사업소득자에 한정되지 않음
 - 적용요건의 측면을 살펴보면 청색신고제도의 적용요건은 단순히 장부기장과 관련된 요건 이외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외부적인 경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증가 요건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 등은 고려되지 않음
 - 세제혜택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성실사업소득자제도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정도의 소득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액의 인상에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 이외 추가적인 소득공제, 특정 인건비의 추가공제, 결손금의 소급공제 허용 등 세제상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에는 우리나라 성실사업소득자와 유사한 제도는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마.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위한 중간예납제도는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또

는 반기별 중간예납 주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중간예납신고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간예납 납부일은 11월 30일임
- 캐나다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소득세 중간예납(quarterly installment payments) 의무가 있으며 분기별 중간예납 납부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임
- 호주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분기별 중간예납(PAYG Instalment payments)의무가 있으며 분기별 납부기한은 11월 28일, 2월 28일, 4월 28일, 그리고 7월 28일임¹¹⁸⁾
- 일본은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이 15만엔 이상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반기별 소득세 중간예납의무가 있고 반기별 중간예납기한은 7월 31일, 11월 30일임

〈표 IV-7〉 국가별 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확정 신고	과세 기간	역년	역년	역년	직전연도 7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역년
	신고일	다음해 5월 30일	다음해 4월 15일	다음해 4월 30일	10월 31일	다음해 3월 15일
중간 예납	의무 적용 대상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사업소득, 투자소득있는 납세의무자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15만엔이상 납세의무자
	주기	연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반기별
	납부일	11월 30일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11월 28일, 2월 28일, 4월 28일, 7월 28일	7월 31일, 11월 30일

118) 특정 업종에 한하여 반기별 중간예납이 허용되며, 이 경우 연간 PAYG 납부액의 75%를 4월 28일
일까지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7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2. 시사점

- 본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현행 소득세제와 국세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체계를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거시자료를 이용한 경제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측면을 고려한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
- 문헌조사의 결과와 국세통계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소득 현황 검토 및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가. 소득세 공제제도의 차등 적용 완화

- 소득원천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금액에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 차원과 동일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동일 ‘담세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획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에 대하여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조사대상 주요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소득세 과세 제도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 역시 업무관련 비용공제 이외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사업소득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계산하여 신고하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과소신고의 유인이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의 확보와 과세표준 양성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시점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적으로 징수하고, 매월 또는 반기나 분기별로 과세당국에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근로소득은 대부분 노출됨
 - 사업소득자의 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소득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

용카드 등의 발행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매출 기록을 누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동시에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용계좌의 사용이나 적격증빙 수취 의무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업무경비와 개인적 가사경비의 실질적 구분이나 판별이 어려워 필요경비의 과대 계상할 가능성이 있음
 - 국세통계에 의하면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91.19%으로 낮지 않는 수준임(〈표 II-13〉 참조)
- 그러나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수표제도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청색신고제도 이외에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제도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소득자의 세원포착은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으로는 〈표 IV-5〉에서와 같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소득자의 신고건수나 금액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크지 않을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에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를 도입·운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자신고 통계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신고 관련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2008년의 일반사업소득자가 49.35%에서 2012년 현재 52.06%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기준점인 연 4,800만원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고정되어 왔으므로 물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차감하면 이러한 일반 사업소득자 수의 점진적 증가는 특이한 점이 아닐 수도 있음

□ 사업소득 신고측면에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소득자 중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소득자는 2008년 70.25%에서 2012년 73.88%로 증가함(〈표 II-16〉 참조)

□ 그러나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신고에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절반이상이고, 기준경

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의 수준이 낮지 않은 수준인 까닭에 사업소득의 신고에 있어서 질적인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2010년 53.67%, 2011년 52.32%, 2012년 51.16%임(〈표 II-20〉참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는 2008년 45.03%, 2009년 40.56%, 2010년 39.19%, 2011년 37.65%, 2012년 37.25% 수준으로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임(〈표 II-21〉참조)

–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7.49%에서 2012년 69.79%로 증가함

□ 적격한 증빙서류의 미수취나 무기장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현황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이러한 가산세를 결정·경정되거나 자진하여 납부하더라도 추계에 의한 신고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표 II-23〉참조)

○ 그리고 〈표 II-22〉의 세무조사에 의한 소득세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사업소득자가 세무조사에서 결정되거나 경정되어 추징된 탈루세액이 2012년 현재 8,570억원 수준으로 직전 5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추징된 세액의 크기는 당초 신고세액의 5%에 육박하는 수준임

□ 이러한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소득자의 장부기장에 의한 사업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현황이 과거에 비하여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처리를 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수 및 소득규모,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또는 소득탈루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차등 제도운영이 오히려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게 될 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동일하게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주요국에서의 근로소득자 대비 사업소득자의 수, 근로소득(또는 종합소득)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제 적용에 차별을 두어 운영·관리하는 것이 비용-효익(cost-benefits)의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¹⁹⁾

나. 성실사업소득자제도의 정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 모든 사업소득자에게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단기적 측면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과세표준을 진실되게 신고하는 성실한 사업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정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공평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성실사업소득자 요건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사업용계좌의 사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동시가맹 등은 개별적인 사업소득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주된 방법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진실되게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성실사업소득자의 사적 가사경비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소득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사업소득자가 성실사업소득자가 되고자 하는 유인을 보다 크게 할 필요가 있음
 - <표 II-7>와 <표 II-8>에서와 같이 현행 과세제도하에서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소득자 간 차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소득공제, 그리고 보험료세액공제 항목에서 찾아 볼 수 있음

119) 국가별 국세통계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소득세 신고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신고자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의 약 23.94%인데 반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각각 19%, 21%, 10%, 6%를 차지하고 있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의 약 23%정도인데 반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 조정총소득(또는 총소득)의 약 4.52%, 7.60%, 4.92%, 2.20% 정도임

-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하는 성실사업소득자 개념이 각기 다르며, 이에 따른 혜택도 차이가 있어 제도의 운용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액이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소득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므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성실사업소득자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여 한시적인 규정이 아닌 영구적인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실사업소득자 개념을 「소득세법」에서 재정의한 후 현행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등의 공제 혜택 규정도 통합 또는 폐지의 검토가 필요함

- 적용요건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적용이나 업종별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수입금액요건, 3년 이상의 사업영위 요건, 신용카드 등 가맹의무화 요건 측면에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수입금액 요건으로 직전 3년의 연평균 금액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은 ‘과세표준 신고의 성실성’과는 관련있는 요건으로 보기가 어렵고, 외부적인 경제상황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어, 납세여건 등 현실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3년 이상의 사업영위’ 요건은 과세표준 신고의 성실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기간의 축소 내지 요건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또는 ERP나 POS 도입) 요건은 사업소득자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요건 적용여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 중 예술·방송·스포츠 등에 종사하는 자, 농림어업자, 소규모 제조업자 등에 있어 동 요건 적용의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 소매업자, 음식업자 등에게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원화된 성실사업소득자의 장부기장 요건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으로 점진적으로 일원화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사업소득자 소득신고의 현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성실사업소득자 요건 중 장부기장 요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기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조사 대상국 중 일본이 사업소득자에 의한 장부기장과 신고납세를 유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색신고제도를 살펴보다도 엄격한 장부기장 및 보관의무 이외에는 외부적인 경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증가 요건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 경비율 추계신고 범위의 축소를 통한 장부기장 실무 장려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정상 개선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소득자는 도관이나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소득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덜 제한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임
 - 조사 대상국인 호주, 캐나다의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제도를 통하여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단지 우리나라만 당면하는 현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¹²⁰⁾

120) 조사 대상국인 호주, 캐나다를 살펴보면 인적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의한 탈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호주는 인적용역소득제도(Personal Service Income)를 도입하였고, 캐나다에서는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incorporated employee)과 관련된 인적용역사업(Personal Service Business)제도를 도입하여 두 국가 모두 해당 제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영세한 사업소득자의 장부기장 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간소화된 기장 의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관행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비록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2012년 현재 전체 사업소득자 중 약 7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절반 이상이 추계신고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음(〈표 II-18〉 참조)

- 더욱이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소득자의 장부기장 동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¹²¹⁾
 - 경비율제도는 과거 장부기장에 대한 제반제도가 미비하였을 때 이를 보조하고자 등장하였으나 현재는 업종별로 발생할 필요경비 수준에 대한 지침으로서 활용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율과 비교하여 공제액을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91.19%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 비용에 대한 부적절한 장부기장을 통한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 신고 비율이 총 사업소득자 신고 건수의 약 75%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실무가 정착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면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실무의 정착을 위하여 간편장부 대상 사업소득자의 수를 점차 감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장부기장에 의한 자가신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 이외 별도의 세제

12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추계신고에 의한 비율이 2010년부터 2012년 최근 3년 간 기준 경비율의 경우 약 12%, 단순경비율의 경우 약 26%이고 〈표 II-10〉에서와 같이 자가신고 또는 결정, 경정으로 인해 자진납부 또는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의 수준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¹²²⁾

라. 중간예납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예납제도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자는 반기마다, 근로소득자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음
 - 사업소득자는 해당연도 과세연도 소득세 등에 대하여 중간예납으로 일부 납부하고, 다음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세 등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음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원천징수를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부담액을 일정부분 미리 예납하였다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음

- 조사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를 주기로 하여 중간예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업소득자의 1회 예납보다 그 횟수가 많음

-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납한 이후 확정신고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등의 수준에 따라 과소신고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1회의 중간예납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확정신고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22) 현행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공제이외에 발생비용의 6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세제실, 2013.
- 김재진 · 이정미 · 유현영,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연구』,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성명재 · 장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 · 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중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이준봉,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도쿄세리사회,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리사제도』, 2013.
-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 日本 國稅廳, 『はじめてみませんか? 青色申告!』, 2014.
-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 Australia Tax Office(ATO), “Individual tax return instructions 2013,” NAT71050-06.2013, 2013a.
- _____, “Individual tax return instructions supplement 2013,” NAT71051-06.2013, 2013b.
- _____, “Personal services income for sole traders,” NAT 72511-11.2011, 2011.
-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54th Edition, 2014.
- _____, “Canadian Income Tax Act with Regulations,” Annotated, 97th Edition, 2014.

- _____, "Canadian Master Tax Guide, 67th Edition," 2012.
- CRA, "Employment Expenses Includes forms T777, TL2, T2200, and GST370 2013," T4044(E)Rev.13, 2013a.
- _____,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2013," 5000-G, 2013b.
- _____, "Income Tax Information circular IC78-10RS Books and Records Retention/Destruction," 2010.
- Ernst&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Income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2013-2014," 2013.
- Gutiérrez et al., "Global Individual Tax Handbook 2011"(Amsterdam: IBFD).
- IRS,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for use in 2015", 2015.
- Speer, Sean, Palacios, Milagros, Lugo, Marco, and Vaillancourt Francois, "The Cost to Canadians of Complying With Personal Income Taxes", Fraiser Institute, 2014.
- Stuckey, Brett and Adriane Yong, "A Primer on Federal Personal Income Taxes," Publication no. 2011-43-E, 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Library of Parliament, Ottawa, 2011.

세법연구 14-05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2014년 12월 17일 인쇄

2014년 12월 24일 발행

저 자 김재진 · 박수진 · 이형민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29-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